

2007년 2월

박사학위논문

감사인과 세무조정인의 규모 및 동일성에
따른 감사인의 독립성에 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양금숙

감사인과 세무조정인의 규모 및 동일성에
따른 감사인의 독립성에 대한 연구

An Empirical Study on Auditor's Independence on the Size
and the Identification of Auditors and Tax Accountants

2007년 2월 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양 금 숙

감사인과 세무조정인의 규모 및 동일성에 따른 감사인의 독립성에 대한 연구

An Empirical Study on Auditor's Independence on the Size
and the Identification of Auditors and Tax Accountants

지도교수 김 안 규

이 논문을 경영학박사 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10월 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양 금 숙

양금숙의 경영학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대학교	교수	인
위원	대학교	교수	인
위원	대학교	교수	인
위원	대학교	교수	인
위원	대학교	교수	인

2006년 12월 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Abstract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4
제2장 이론적 배경	6
제1절 감사인의 독립성 및 독립성 관련제도	6
1. 감사인 독립성 관련제도	6
2. 비감사서비스와 감사인 독립성의 문제	11
제2절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와 이해상충관계	18
1. 감사인과 피감사인간의 상충관계	18
2. 감사인의 업무영역 범위에 따른 상충관계	22
제3장 선행연구의 검토	28
제1절 재량적 발생액 관련연구	28
제2절 감사품질과 감사인의 규모 관련연구	32
제3절 세무조정품질과 세무조정대리인 규모 관련연구	35
제4장 가설의 설정과 연구방법	37
제1절 가설의 설정	37
1. 감사인 규모	38
2. 세무조정인 규모	39
3. 감사인과 세무조정인의 일치여부	40

제2절 변수의 측정	40
1. 법인세추징세액	41
2. 감사인의 규모	41
3. 세무조정인의 규모	42
4. 감사인과 세무조정인의 일치여부	42
5. 표본의 선정	43
제3절 연구모형	43
제5장 실증분석 결과	45
제1절 표본 및 변수의 특성	45
1. 표본대상법인의 형태별-지역도별 분포	45
2. 표본대상법인의 추징세액 규모	46
3. 감사인 및 세무조정인 분석결과	47
제2절 검증모형의 분석결과	51
1. 변수의 기술통계량	51
2. 감사인 규모에 따른 법인세추징세액 차이에 대한 t-검정	52
3. 회귀분석 결과	54
제5장 결론	58
참고문헌	61

<표 목 차>

<표 2-1> 감사인 지정시와 자유수임시의 감사의견분포에 대한 동일성 검정 ...	8
<표 2-2> 감사인 지정회사와 자유수임회사의 감사의견비교	9
<표 2-3> 감사인의 매출액 현황	15
<표 4-1> 국내 회계법인의 외국 대형회계법인과의 제휴현황	42
<표 5-1> 표본대상법인의 형태별-지역별 분포	45
<표 5-2> 표본대상법인의 형태별 및 지역별 법인세추징율	47
<표 5-3> 표본대상의 형태별·지역별 감사인 분포	48
<표 5-4> 표본대상의 형태별·지역별 세무조정인 분포	49
<표 5-5> 표본대상의 형태별·지역별 감사인과 세무조정인 일치여부 분포	50
<표 5-6> 평균과 표준편차	51
<표 5-7> 감사인과 세무조정인 및 감사인-세무조정인 동일여부에 의한 t-검정 결과	52
<표 5-8> 상관관계 분석 결과	54
<표 5-9> 회귀분석 결과	56

<그림 목 차>

<그림 2-1> 감사인의 독립성에 관련된 요소	12
---------------------------------	----

ABSTRACT

An Empirical Study on the Auditor's Independence on the Size and Identification of Auditors and Tax Accountants

Yang, Gum-Sug

Advisor : Prof. Kim, An-Gyu, Ph. D.

Department of Accounting

Graduate School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aims at positively speculating relations between size of auditor and tax accountants and their identification using assessed corporation tax amount assessed by tax authorities as a substitute of independency of auditor.

It was to demonstrate what relations the assessed corporation tax amount decided after the audit of corporations by the tax authorities as a substitute of independency of auditors have with size of auditors and tax accountants, and identification of auditors and tax accountants. For the purpose, it decided size of auditors and tax accountants and identification of auditors and tax accountants as sub-variables and reported payment of the subjects as a control variables.

It used a t-test and a regression analysis to demonstrate the hypotheses and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

As a result of the t-test, this study foun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ssessed corporation tax amount according to size of auditors

and tax accountants and whether they are from the same organizations. Then, in the analysis involved in size of the tax accountants, the assessed corporation tax amount was relatively higher for non-large tax accountants compared to large-scale tax accountants.

Though i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considering the results, this study assum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ssessed corporation tax amount according to size of auditors and tax accountants, and whether they are same ones

As a result of the regression analysis, this study found that for both the assessed amount compared to reported size and assessed corporation tax compared to paid amount, sub-variables were significantly related with three independent variables : sizes of report, scales of tax accountants and the payment compared to reported size. That is, the tax authorities recognized the corporations which reported larger amount as more faithful than ones that reported smaller amount.

However, this study has limitations as follows :

To sum up the results of the study, insisting audit quality of large-size auditors is not higher than that of small-size auditors is unreasonable. Rather, as many previous studies did not provide consistent results on relations between audit quality and size, the results of the study may be interpreted as follows : there was no difference in quality according to size of auditors. However, this study assumed that the results were obtained because of difference in conservative viewpoints of auditors and viewpoints focusing on disclosure of curtailed income report. At any rate, unlike what is generally expect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at the assessed tax amount increase when large-sized auditors audit are very significant and to demonstrate the specific reasons, we need further intensive analyses using more specified information.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시장(capital market)은 자원배분 기능을 담당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자본시장에서의 회계정보는 기업가치에 대한 내부정보를 가진 정보공급자와 정보수요자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정보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의 문제를 완화하여 사회적 부(wealth)를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공정하게 재분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000년에 발생하였던 엔론(Enron)의 분식회계와 이에 연루된 대형회계법인인 아서앤더슨(Arthur Andersen)이 외부감사인으로서 독립성을 상실하여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시장에 전달되는 회계정보는 사적 정보(private information)라기 보다는 공적 정보(public information)로서의 성격이 더 강한 것이 오늘날 회계환경의 특징이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 정부는 2002년도에 기업회계개혁법(일명 Sarbanes-Oxley Act 2002)을 제정하여 기업회계와 외부감사에 대한 사회적 규제를 더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03년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함)」과 「증권거래법」 및 「공인회계사법」 등을 개정하여 기업의 회계투명성과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회계감사는 경영자가 제공하는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회계정보를 이용하는데 수반되는 정보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적 통제방안의 하나이다. 이와 같은 회계감사의 기능은 일정한 수준의 감사품질(audit quality)의 유지를 전제로 한다.

DeAngelo(1981)는 감사품질을 “감사인이 감사대상회사의 회계시스템에서 위반사항을 발견할 확률과 그 위반사항을 보고할 확률의 곱합확률에 대한 시장의 평가치”로 정의하고 있다.¹⁾ 감사인이 위반사항을 발견할 확률은 그 감사인의 전문

가로서의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그 발견사항을 보고할 확률은 그 감사인의 감사대상 회사에 대한 독립성에 의존한다.

감사받은 재무제표가 신뢰할 수 있으려면, 본질적으로 회계실체(accounting entity)가 작성한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만일 회계실체가 작성한 재무제표에 중요한 오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라면, 회계감사에서 이러한 오류가 발견되어 재무제표가 적정하지 않다는 감사의견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만일 회계감사의 품질이 떨어질 경우 재무제표는 오류를 포함하게 되고 회계정보이용자를 오도하여 자원의 배분을 왜곡시키게 된다.

감사의 품질수준은 개별 감사현장에서 감사를 담당하는 감사인 각자의 실무적 능력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외부감사제도 전체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감사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감사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감사인과 그 감사인에 소속된 감사인력의 전문가적 능력과 독립성이다. 감사인과 감사인에 소속된 감사인력이 전문가적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감사를 수행한다면, 높은 품질수준의 감사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재무보고 목적에 초점을 두는 외부감사인제도와 함께 세무보고 목적을 위한 세무조정인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세무조정인으로서의 대표적인 역할은 공인회계사와 세무사가 담당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무보고 목적의 관점에서 기업은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회계이익을 과대계상할 유인을 갖는다. 이는 기업이 시장에서 기업가치를 평가받거나 투자자 및 채권자 등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는데 따른 유인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세무보고의 관점에서 기업은 세금비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신고 외형이나 이익을 축소하기 위한 조정 유인을 갖는다.

한편, 법인세법 제60조에서는 과세표준의 근거로 제출하는 서류로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와 동법 규정에 의거한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은 이와 같은 법인세법 등의 규정에 의거

1) DeAngelo. L, "Auditor Size and Audit Quality",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 (1981), pp. 183~199.

하여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여 법인세 비용을 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정 계산서를 작성하여 과세당국에 제출하고 있다.

따라서 감사인이 독립성을 확보하고 공정타당하게 감사가 이루어져 감사의견이 표명된 재무제표와 이를 근거로 하여 역시 적법하게 세무조정계산이 이루어진다면, 기업이 과세당국에 신고하는 과세기간동안의 법인세액은 과세당국이 징수결정하는 납부세액과 일치한다.

그러나 감사인의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또는(그리고) 세무조정인 등에 의한 적법한 세무조정계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업이 신고하는 법인세액과 과세당국에 의한 징수결정액 간에는 차이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과세당국의 법인조사 후 결정되는 법인세추가징수액(이하 ‘법인세추징액’이라 함)은 감사인의 독립성과 세무조정인 등에 의한 세무조정계산의 정확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감사인의 독립성과 관련한 이전까지의 연구는 이익조정 내지는 이익조작 관점에서의 재량적발생액(discretionary accruals)이나 감사인의 감사서비스 대비 비감사서비스의 비중 등을 변수로 하는 재무보고의 관점에서 주로 이루어진 바 있고, 세무보고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재무보고 목적의 회계기준인 기업회계기준에 의거하여 작성된 감사받은 재무제표가 법인세 납부세액의 결정을 위한 최초의 기초자료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감사인의 독립성이 납부세액의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법인세 납부세액 결정 후 과세당국에 의해 추가결정되는 법인세추징세액은 감사인의 독립성을 판단하기 위한 다양한 대용치(proxy) 중의 하나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감사인의 규모 및 세무조정인의 규모, 그리고 감사인과 세무조정인간의 동일성 여부가 감사인의 독립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적으로 검토분석한 후, 감사인 독립성 대용치로서의 법인세추징세액의 크기를 이용하여 독립성 강화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감사인의 독립성에 관한 연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전통적인 연구 주제인데, 현재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 미국 등에서도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회계환경에서 우리나라 감사인의 독립성과 관련된 주요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감사인의 독립성은 사실상(정신적) 독립성과 외관상의 독립성으로 나눌 수 있다. 사실상의 독립성은 감사인의 심리상태로서 일정한 연구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검증하기가 매우 곤란한 분야이다. 그리고 외관상의 독립성은 일반 대중의 감사인에 대한 지각(perception)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각 국의 관련제도는 대부분 외관상의 독립성에 초점을 맞추어 각종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이를 통한 사실상의 독립성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그 동안 논의되어 왔던 감사인 독립성 강화방안을 검토·분석한 후 감사인 독립성 대응치로서의 법인세추징세액이 크기를 이용하여 독립성 강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과세당국의 법인조사 자료를 근거로 하여, 감사인의 규모를 대형감사인과 비대형감사인으로 구분하고 세무조정인 역시 대형세무조정인과 비대형세무조정인으로 구분하고 동시에 감사인과 세무조정인의 동인인 여부를 주요 독립변수로 하여 감사인의 규모와 세무조정인의 규모 및 감사인-세무조정인 일치여부에 따라 감사인 독립성의 대응치로서 법인세추징세액이 이들 변수와 어떠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1장의 서론에서는 이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제시하여 논문의 의의를 밝혔다. 본론은 크게 4개의 장으로 구성되는데, 제2장에서는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서 감사인 독립성 이론을 정리하고, 이 이론을 바탕으로 실증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문헌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감사인의 독립성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실증연구를 위한 연구의 모형 및 가설설정과 구체적인 연구

조사방법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제5장에서는 연구결과의 분석부분으로서 가설에 대한 검증결과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인 제6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 정리함은 물론 연구 시사점, 한계점 및 개선사항 등을 기술하여 후속연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감사인의 독립성 및 독립성 관련 제도

1. 감사인 독립성 관련 제도

감사인은 잠재적으로 세 가지의 상충된 이해관계에 관련되어 있다. 이들 상충된 이해관계는 감사인으로 하여금 직업적 기준에 따르지 않는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감사인의 독립성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다. 감사인의 상충된 이해관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감사인과 고객간의 상충된 이해관계인데 고객은 이해관계자 집단에 대하여 좋은 인상을 갖게 하는 보고서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인은 직업적 기준을 준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기대하고 있으므로 잠재적인 이해 상충관계가 발생하게 된다.

둘째, 주주와 경영자간의 갈등적인 이해관계를 보면, 주주들이 경영자의 업적을 평가하는데 감사인의 보고서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므로 경영자는 주주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하여 감사인으로 하여금 더욱 호의적인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영향을 미치는데 노력하는 것이다.

셋째, 감사인의 이기주의와 직업적 충실성간의 갈등으로서 감사인은 좀 더 순응적인 회계법인으로 대체된다는 위험감수보다는 경영자의 요구에 동의하려는 경향이 내적 갈등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경영자의 감사인 선택권한은 감사인의 모든 권한에 비해 상대될 수 없는 초월적인 권한이므로 이러한 구조 하에서의 감사의 질 즉, 독립성을 어떻게 유지하는가가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립성의 유지를 위한 대표적 방안으로써 감사인 지정제도와 감리제도 및 감사인 평가제도가 있다.

가. 감사인 지정제도

1982년에 도입된 자유수임제도가 감사대상회사의 감사선임권 남용과 감사인의 독립성결여라는 문제점을 유발시킨다는 주장에 의하여 그 개선방안으로 1991년말 결산법인부터 자유수임제도와 함께 감사인 지정제가 병행하여 운용되고 있다. 감사인의 선임과 관련하여 감사의 공정성 및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외감법 제4조의 3 및 관련규정에서는 증권선물위원회가 회사가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요청한 경우에 당해 회사의 감사인을 지명하거나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 3개 사업연도의 범위 안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을 변경선임 하거나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제4조 제1항 제5항 또는 제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

(2) 회사가 감사인을 교체한 경우에 그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4조 제2항 또는 제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의 당해 회사

(3)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결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또는 결합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사실이 지적된 회사. 다만,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위반으로 지적된 회사를 제외한다.

(4)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 중 대주주 및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대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회사

(5) 주권상장법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회사

(6)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은행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의 당해 회사

(7) 기타 공정한 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

또한, 이명곤(1999)은 감사인 지정제도가 감사의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검토해 보았으며 이중 감사인지정시와 감사인 자유수입시 감사의견 분포의 차이에 관해 유의한 연구결과가 나타남을 보이고 있다.²⁾ 다음 자료는 증권조사월보에 게재된 1994년부터 1996년까지의 감사의견 실태현황 자료를 이용한 것이다.

<표 2-1> 감사인지정시와 자유수입시의 감사의견분포에 대한 동일성 검정

구분 \ 감사의견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 의견거절	계
감사인 지정시	800(769.99)	74(107.98)	12(8.04)	886
감사인 자유수입시	17,120(17,150.01)	2,439(2,405.02)	175(178.96)	19,734
계	17,920	2,513	18	20,620

* 검증결과 : $\chi^2(d.f.=2)=14.434$ 단, $\alpha=0.05$ 에서의 $\chi^2(d.f.=2)=5.99$

* ()는 두 집단간에 전혀 차이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의 예상빈도 수

* 부적정의견과 의견거절을 합한 이유는 각각 자료의 수가 5개 미만이었기 때문이다

2) 이명곤, “우리나라 회계감사실무의 검토”, 『회계감사저널』, 제1권 창간호, (1999), pp. 184~187.

<표 2-1>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감사인이 지정되는 경우가 자유수임되는 경우보다 감사의견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인 지정시 적정의견을 살펴보면, 실제 빈도수가 예상빈도 수보다 약 4%가 많은 800개로 나타나 있고 한정의견에서는 실제빈도수가 예상빈도 수보다 31%가 적은 74개로 나타나 있다.

반면에 자유수임의 경우에는 적정의견을 살펴보면, 실제빈도수가 예상빈도수에 비하여 0.2%가 적은 17,120개로 나타났고 한정의견에서는 실제빈도수가 예상빈도수에 비하여 1.4%가 많은 2,439개로 나타났다. 따라서 감사인지정시와 감사인 자유수임시 감사의견분포는 다르며 감사인 지정시 적정의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결과를 보면, 감사인 지정 대상회사는 감사인을 지정당함으로써 야기되는 감사환경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회계처리의 개선 등을 통해 이에 대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2> 감사인 지정회사와 자유수임회사의 감사의견비교(단위: 건수)

연도 감사의견	1995			1996			1997		
	지정	자유	계	지정	자유	계	지정	자유	계
적정의견	287 (88.0)	5,666 (86.5)	5,953 (86.6)	287 (93.2)	6,373 (86.9)	6,660 (87.1)	211 (90.6)	5,975 (85.8)	6,186 (86.0)
한정의견	32 (9.8)	834 (12.7)	866 (12.6)	20 (6.5)	879 (12.0)	899 (11.8)	20 (8.6)	861 (12.4)	881 (12.3)
부적정의견	3 (1.0)	7 (0.1)	10 (0.1)	- (-)	13 (0.2)	13 (0.2)	1 (0.4)	37 (0.5)	38 (0.5)
의견거절	4 (1.2)	42 (0.7)	46 (0.7)	1 (0.3)	70 (0.9)	71 (0.9)	1 (0.4)	88 (1.3)	89 (1.2)
계	326 (100.0)	6,549 (100.0)	6,875 (100.0)	308 (100.0)	7,335 (100.0)	7,643 (100.0)	233 (100.0)	6,961 (100.0)	7,194 (100.0)

또한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3년간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해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와 자유수임회사의 적정의견 비율을 비교해보면,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의 적정의견 비율이 자유수임에 의한 회사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³⁾ 이는 감사인 지정제도에 의해 감사인의 독립성이 강화됨에 따라 회사가 외부감사를 의식하여 적정 회계처리를 하거나 또는 감사인의 수정권고를 반영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며, 감사인 지정제도가 우리나라의 감사환경에서 일정한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나. 감리제도

증권선물위원회는 외감법 제15조에 근거하여 감사의 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감사보고서의 감리와 감사인의 감사업무 운영에 관한 감리 및 평가업무를 수행한다. 감리(audit review)란 외부감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독립된 제3자가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및 감사인 조직에 관한 사항 등 감사업무 전반에 관하여 평가의견을 표명하는 절차를 말한다.⁴⁾ 감리위원회가 수행하는 감리는 감사보고서 감리와 조직 감리, 그리고 회계법인 재무제표 검사로 구분된다.

감사보고서 감리는 일반감리, 특별감리 및 수시감리로 구분된다. 먼저, 일반감리란 감리위원회가 표본추출 등에 의하여 선정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리를 말한다. 다음으로 특별감리란 증권선물위원장의 지시, 기타 중대한 분식 회계처리를 한 회사 혹은 부실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감사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실시하는 감리이며, 마지막으로 수시감리는 기업공개(IPO) 예정회사 등 수시로 필요한 대상을 선정하여 실시하는 감리를 말한다.

조직 감리란 감사인의 감사업무운영 및 조직에 관하여 실시하는 감리로서, 이에는 회계법인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감리와, 중대한 회계분식 및 부실감사정보가 있는 회사 등의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실시하는 특별감리로 구분한다. 조직감리의 결과는 감사인 등급 산정을 위한 평가 자료로 활용되어 감사인 지정시에 우선권이 부여된다. 또한, 회계법인의 회계처리, 손해배상적립금 및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등이 적정한가에 대하여 매년 감리를 실시한다.

3) 외부감사대상회사 감사의견에 관한 실태분석, 『증권조사월보 11월』, (1998), pp. 11~12.

4) 이효익, 『현대회계감사론』, (1999), pp. 108~109.

이상과 같은 우리나라의 직접규제에 의한 공공감리 방식은 행정력을 통한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전문 감사요원의 확보 및 획일적 기준에 의한 감리 등의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의 자율규제(peer review) 제도와 비교하면 비효율적인 측면도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참고로 증권선물위원회는 일차적으로 비상장회사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업무를 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감사의 질적 통제업무를 공인회계사회가 스스로 자율관리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다. 감사인 평가제도

회계법인 평가의 1차적 목적은 회계법인의 조직화를 촉진하고 회계법인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며, 회계법인 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통하여 회계감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회계감사의 사회적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회계법인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는 회계법인의 조직화수준이고, 다른 하나는 수행한 감사의 질적 관리수준이다.⁵⁾ 회계법인에 대한 평가결과가 우수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책을 펴는 한편 그렇지 못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도록 유인책을 실시하는 균형 있는 정책집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회계법인 전체의 서비스 품질개선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2. 비감사 서비스와 감사인 독립성의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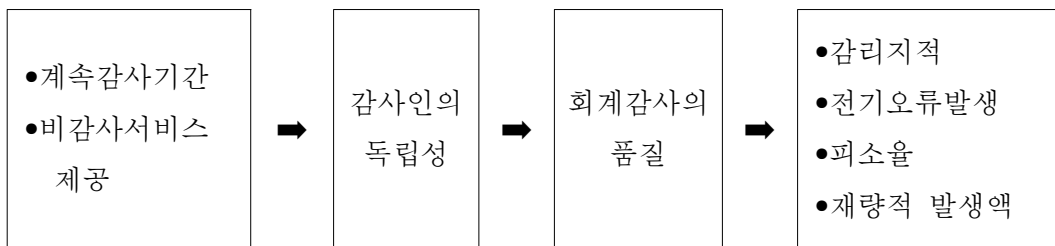
DeAngelo(1981)는 감사인의 독립성이란 감사 중에 발견된 오류 및 특정 사항을 보고할 확률로 정의하고, 감사품질이란 감사기술 수준(즉, 피감사기업의 회계시스템에 오류가 존재하고 이를 발견하는 확률)과 감사인의 독립성의 결합 확률로 정의하였다. 감사인의 독립성은 감사절차의 수행, 그 결과의 평가 및 감사보고서

5) 이명곤, 전계논문, p. 187.

의 작성에까지 이르는 모든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감사인의 독립성이 낮을수록 회계감사의 품질은 낮아지게 된다.

<그림 2-1>에서 보듯이 회계감사 품질은 그 속성상 직접 관찰하거나 계량화하기 불가능하므로 선행연구에서는 이의 대용치로 감사실패로 인한 피소율, 감리지적, 계속기업 불확실성 관련 감사의견 그리고 전기오류수정 사항의 보고를 이용하였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회계감사의 품질로 경영자의 이익조정 정도를 나타내주는 재량적 발생액⁶⁾이나 비감사서비스인 세무조정에 따른 법인세추징세액⁷⁾ 등을 이용하고 있다.

<그림 2-1> 감사인의 독립성에 관련된 요소



계속감사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비감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피감사기업이 속한 산업동향 및 정보, 피감사회사의 내부통제 구조 및 거래형태, 자금구조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축적되어 재무제표에 포함된 오류를 발견할 확률이 증가하여 감사품질을 향상시키는 측면이 있다.

한편, 오랜기간 동안의 회계감사를 통한 유대관계의 강화 또는 비감사서비스에 치중하여 상대적으로 보수가 낮은 회계감사에 소홀하여 재무제표에 포함된 오류를 발견하지 못할 확률이 증가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외감법에서 회

6) 대다수의 선행연구들이 재량적 발생액을 감사인의 독립성을 나타내는 측정치로 설명하고 있는 반면 감사품질과 감사인의 독립성이라는 두 개의 용어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연구도 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양자는 같다고 할 수 없으며, 감사품질은 감사인의 독립성보다는 더 포괄적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7) 박수원, “법인세추징세액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계법인은 동일한 이사로 하여금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경우에는 4개년)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에 대하여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그 감사팀의 3분의 2이상을 교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감사인 스스로 구축한 재무시스템이나 스스로 수행한 비감사서비스가 회계감사의 대상일 경우 발견된 오류를 보고할 확률도 감소하여 감사품질을 저하시키는 측면이 있다. 즉, 계속 감사기간이나 비감사서비스의 제공은 감사인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궁극적으로 감사품질에 영향을 주게 된다.

가. 감사인의 독립성과 관련 규제

국가 경제의 자본 형성은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상장된 공개기업에 투자를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때 공개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이 클수록 투자자들은 자발적으로 투자하고자 하고 주가도 효율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인의 독립성이다. 독립적인 감사인의 의견에 따라 투자자들은 공시된 재무제표가 정확하고 공정하며 완전하다고 믿게 된다.

감사인의 독립성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한다. 하나는 어떠한 다른 외적 요인이 감사인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높은 수준의 감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감사인은 자신의 판단이 피감사기업의 경영진의 이해와 상충하거나 감사법인의 이해와 상충하더라도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의심을 가지고 개별 감사를 수행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 불편부당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능력과 의지를 가져야 한다. 다른 하나는 기업들의 재무제표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한다. 공개되고 이용 가능한 재무제표의 진실성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는 주식시장에서 기본이 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미국회계업계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회계법인들이 비감사서비스의 유형, 수익, 횡수가 증가함에 따라 경영자문제공회사로 변화하고 있으며, 회계법

인과 피감사기업 사이에 전략적 제휴, 공동마케팅협약, 합작투자 등과 같은 경영 계약의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피감사기업을 포함하여 일반대중에게 주식을 처분하고 컨설팅업무, 신기술, 교육훈련에 대해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자본을 필요로 하기도 한다.

또한 국내·국제적으로 회계법인의 규모가 커지고 있고 여러 법인들이 하나의 이름으로 제휴하여 마케팅하면서 국제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중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회계법인들이 피감사기업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유형이 상당히 증가하였고 그 유형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감사인들에게 자신들의 내부통제구조, 연금제도, 재무기능, 행정기능, 판매기능, 자료처리기능, 마케팅기능, 세무조정 등을 의존하고 있다.

미국의 5대 회계법인의 비감사서비스⁸⁾에 대한 수입이 1999년에 150억 달러에 이르고 있는데, 위의 회계법인들의 총수입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비감사서비스는 1981년에는 총수입의 13%에 불과했으나, 1993년부터 1999년까지 비감사서비스 수입의 연평균 성장률이 26%에 달해 감사서비스의 성장률 9%, 세무관련 서비스의 성장률 13%에 비해 현저하게 높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회계법인에 의한 비감사서비스가 최근에 증가하였는데, 이는 <표 2-3>과 같다.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년 및 2005년의 우리나라 감사인(회계법인 및 등록감사반)의 회계감사 서비스에 따른 수익은 전체 수입의 약 35% 내외에 불과하다. 반면에 세무조정 및 경영자문 등 비감사서비스에 따른 수익은 약 65%로서 감사서비스 수익에 비해 약 30% 포인트 높은 실정이다. 감사인이 회계법인인 경우는 감사서비스에 의한 수익이 40%를 상회하는 반면 감사반의 경우에는 약 10% 수준으로서 회계법인에 비해 감사반의 감사인으로서의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8) 여기서 비감사서비스(non-audit service)란 공인회계사가 제공하는 회계감사(audit service) 외의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 예를 들어 경영자문업무, 세무관련 업무, 회계시스템 구축 업무, 반덤핑(anti-dumping)업무, 기장대리업무 등이 있다.

<표 2-3> 감사인의 매출액 현황(단위 : 백만원, %)

사업 연도	감사인	회계감사		세무조정		경영자문 등		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2005	회계법인	462,316	42.75%	202,414	18.72%	416,728	38.53%	1,081,456
	감사반	41,481	11.86%	90,830	25.96%	217,530	62.18%	349,841
	소계	503,797	35.20%	293,244	20.49%	634,258	44.31%	1,431,297
2004	회계법인	416,573	44.79%	167,087	17.97%	346,307	37.24%	929,967
	감사반	31,362	8.46%	99,318	26.77%	240,285	64.77%	370,965
	소계	447,935	34.43%	266,405	20.48%	586,592	45.09%	1,300,932

자료 : 한국공인회계사회

이와 같이 비감사서비스가 증가하는 이유는 부실한 회계감사에 대한 법적 책임은 무거우면서 상대적으로 보수가 적은 반면에 비감사서비스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이 경영진에게 있으므로 회계감사보다는 책임이 낮을 뿐 아니라 부실한 비감사서비스에 대한 입증도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비감사서비스의 제공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므로 회계전문가집단이 상대적 우위에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감사인들은 회계감사보다는 비감사서비스를 선호하게 된다.

비감사서비스의 증가와 관련되어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은 회계감사의 의견구매현상(loss leader phenomenon)이다. 이것은 감사인이 감사보수를 낮게 책정하여 손해를 보면서 고객에게 비감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관계를 이끌어 내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의견구매현상은 감사인의 독립성 문제를 야기하는데, 이는 비감사서비스 업무의 수주를 위해 감사의견을 실제보다 좋게 표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비감사서비스의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감사보수 저가 책정(low balling)이 감사인들에게 회계감사가 비감사서비스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를 전달하게 될 수 있고, 감사인 자신의 조언에 의하여 수행된 결과를 자기가 감사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02년 엔론과 월드콤 등의 회계부정사건 이후에 분식회계에 대한

논란이 증가하였으며, 그 후에 기업회계개혁법(Sarbanes-Oxley Act)⁹⁾의 제정과 공개기업회계감독위원회(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 PCAOB)의 설치 및 비감사서비스에 대한 제한 등의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한 회계법인이 감사와 비감사서비스를 동시에 수행한 9개 회사가 분식회계 혐의와 회계처리 오류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져 회계법인의 감사와 비감사서비스의 분리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또한 금융감독원에서는 2001년 12월부터 회계투명성 향상을 목적으로 “감사인의 감사 보수, 감사소요시간, 감사인과의 용역계약 내용(비감사서비스의 용역계약 내용)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였다.¹⁰⁾

위에서 언급한 Sarbanes-Oxley법에 의해 금지된 비감사서비스는 2000년 12월에 개정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 SEC)의 독립성 규정(SEC Final Rule, 2000)상 금지된 서비스와 대부분 일치한다. 다만, SEC Final Rule에서는 “경영진의 기능대행(management functions)”과 “인사업무대행(human resources)”을 구분하였으나 Sarbanes-Oxley법에서는 구분하지 않았으며, SEC Final Rule에서는 “거래중개서비스(broker-dealer services)”와 “법률서비스

9) Sarbanes-Oxley법에서 금지하는 비감사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 ① 기장대리업무(bookkeeping or other services related to the accounting records or financial statements of the audit clients)
- ② 재무정보시스템의 설계와 구축(financial information systems design and implementation)
- ③ 가치평가, 거래·계약의 공정성에 대한 의견제시(appraisal or valuation services, fairness opinions, or contribution-in-kind reports)
- ④ 보험계리서비스(actuarial services)
- ⑤ 내부감사 지원서비스(internal audit outsourcing services)
- ⑥ 경영진 기능 또는 인사업무 대행서비스(management functions or human resources)
- ⑦ 브로커, 딜러, 투자자문 또는 투자은행 서비스(broker or dealer, investment advisor, or investment banking services)
- ⑧ 감사와 무관한 법률서비스와 전문가 서비스(legal services and expert services unrelated to the audit)
- ⑨ 기타 공개기업회계감독위원회에서 추가로 금지하는 서비스

10)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시제도의 개선”, (2001. 12) 참조.

(legal services)”를 구분하였으나 Sarbanes-Oxley법에서는 “⑨ 기타 공개기업회계감독위원회에서 추가로 금지하는 서비스”를 추가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금지된 비감사서비스 이외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하여 제공될 수 있다. 상장기업이 정기적으로 SEC에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등록회계법인이 제공한 비감사서비스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사전승인 여부를 공시하여야 한다. Sarbanes-Oxley법에서는 사전승인의 절차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회계감사도 감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점에 비추어 일상적인 절차 수준이고 감사위원회에게 상당한 정도의 재량권을 부여할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Sarbanes-Oxley법에서는 비감사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시행규정의 제정책임을 SEC에 위임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현 비감사업무에 대한 계약의 체결 거부 또는 해지는 SEC가 제정하는 규정에 의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인이 감사 또는 비감사업무의 착수 이전에 독립성 위반사유를 해소할 수 있거나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독립성 위반사유를 감사의 종결 전 단기간에 해소할 수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감사인의 독립성 상실의 판단기준은 “감사인 또는 제3자가 판단하기에 독립성 훼손으로 인한 영향이 중대하고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도 수용 가능한 수준 이하로 감소시킬 수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 수행이 금지된 비감사업무로는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피감사회사의 자산·자본 그 밖의 권리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도하기 위한 동 자산에 대한 실사, 재무보고, 가치평가 및 매도거래 또는 계약의 타당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 그리고 인적 독립성이 훼손되는 경우 등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법규상 금지된 업무는 아니지만 감사인의 독립성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높고 그 영향이 중대한 비감사업무 경우에도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감사인의 제도적 안전장치를 통하여 독립성 위험을 제거하거나 수용 가능한 수준 이하로 감사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등의 동의를 얻은 후 수행할 수 있다. 여기에는 기업구조조정 업무, 인적자원의 조달 및 관리의 대행업무, 투자자문 업무, 외감법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구축 및 운영에 대한 검토·평가 또는 그 개선방안의 제시 등이 있다.

제2절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와 이해상충관계

1. 감사인과 피감사인간의 상충관계

우리나라의 회계감사기준 제7조에 감사인의 정신적·외관상 독립성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지만, 감사인의 독립성은 스스로의 정신적 자세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제도적 규제나 사회적 압력에 의해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감사인이 정신적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 외관상 독립성 유지에 관한 제반 규정이 제도적으로 마련될 따름이다¹¹⁾.

가.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요인

감사인의 독립성과 관련하여 Watts and Zimmerman(1981)¹²⁾에 의하면, 감사인은 비록 정부의 규제가 없을지라도 자기감시(self-monitoring)가 충분하도록 독립성을 유지할 유인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감사인의 독립성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논란 및 분석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그 중에서 감사인의 독립성이 존재하는지를 설명하는 데 경제적 요인(economic factors)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제시되어 왔다.

예를 들면, Farmer et al.(1987)¹³⁾은 감사인 독립성에 대한 판단은 고객상실위험, 소송위험과 체계적인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Ponemon and Gobhart(1990)¹⁴⁾는 감사인의 독립성 판단에 감사인의 윤리적 인지(ethical

11) 감사인의 외관상 독립성에 관해 「공인회계사법」과 「공인회계사 직업윤리규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12) Watts, R. L., and J. L. Zimmerman, "Auditors and Determination of Accounting Standards", *Working Paper Series*, No. GPB 78-06, University of Rochester, (1981).

13) Farmer, T. A., L. E. Rittenberg, and G. M. Trompeter, "An Investigation of the Impact of Economic and Organizational Factors on Auditor Independence", *Auditing : A Journal of Practice and Theory*, Vol. 7, (1987), pp. 1~14.

cognition)가 체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으나, Cushing(1990)¹⁵⁾은 이에 대해 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DeAngelo(1981)는 초도감사계약에서 낮은 감사수임료를 책정하는 “로볼링(low balling)”은 감사인의 독립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현재의 (incumbent) 감사인의 기술적 이점과 같은 미래의 준지대(quasi-rents)를 기대하고 이에 대한 경쟁적 반응으로 보았다. 즉 초기의 “로볼링”은 감사인이 이들 이점을 얻기 위한 경쟁과정이며, 초기 감사수임료의 감소는 미래기간에서는 매물원가(sunk cost)이므로 감사인의 독립성에 손상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객별 준지대의 흐름에 대한 변경없이 “로볼링”을 규제하고자 하는 규제기관의 시도는 감사인의 독립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최근 우리 나라의 감사인 시장에서 수임료 자율화에 따라 “로볼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감사인의 독립성 문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¹⁶⁾.

한편 Antle(1984)¹⁷⁾에 의하면 소유주는 보다 독립적인 감사인을 선호하지만, 인센티브 계획이 있을 경우 감사인은 독립성을 유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부만큼 독립성을 포기함으로써 상대적 부를 얻으려는 유인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독립성을 부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어 왔으며, 실증연구들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14) Ponemon, L. A., and D. R. L. Gabhart, "Auditor Independence Judgements : A Cognitive-Development Model and Experimental Evidence",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Vol. 7, (1990), pp. 227~251.

15) Cushing, B. E., "Discussion of Auditor Independence Judgements : A Cognitive-Development Model and Experimental Evidence",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Vol. 7, (1990), pp. 252~260."

16) 공인회계사의 경우 종전의 협회보수기준이 921만원이었으나(자산총액 80억원 미만인 회사), 협회보수기준 폐지 이후 최저 211만원, 최고 1,153만원, 평균 771만원으로 나타나서 최저금액은 종전 보수기준의 1/4에도 달하지 못하고 있다(한국경제신문, 「전문직 몸값 큰 격차.. 수수료도 가격파괴」, 1999년 6월 25일자).

17) Antle, R., "Auditor Independenc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Vol. 22, (1984), p. 16.

먼저, 경영자문업무(MAS : management advisory service) 계약에 대한 관심은 경영자가 감사인에게 보조금(side-payment)을 지급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것이라는 우려로부터 나타난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외부감사인과 중재하기 위한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에 입회인(witness)을 참여시킬 수 있으며¹⁸⁾, 마지막으로 경영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감사인은 소송을 통해 처벌받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통해 감사인의 독립성을 유지시킬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서 다기간 효과(multi-period effects)의 역할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먼저, 소유주와 감사인이 다기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감사인이 독립적이라면, 장기적으로 다양한 감사보고서의 분포를 기대할 수 있다. 만약, 장기적으로 관찰된 감사보고서를 통해 감사인이 성실하게 감사를 수행하지 않고 정보를 진실하게 나타내지 않았음이 발견된다면, 계약상 감사인의 처벌을 요청할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으로는 감사의 비독립성이 감사인의 명성에 역효과를 나타내어 감사인의 서비스에 대한 시장가치를 변동시키므로, 감사인이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에는 명성효과(reputation effects)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유인에는 감사인의 도덕적·윤리적 인지와 같은 내부적 요인뿐만 아니라, 감사인의 명성, 감사위원회의 도입, 소송가능성, 감사기간과 같은 상황적·환경적 요인도 동시에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감사인의 독립성 상실유인

일반적으로 감사인이 감사결과를 진실하게 보고하지 않을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모든 상황을 독립성에 대한 위협요인으로 볼 수 있다. 즉, 형식지향적인 감사인이 감사결과를 무시하고 숨기거나 또는 오도할 유인이 감사 독립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많은 연구들이 감사인의 독립성에 대한 일반의 인식, 즉 “외관상 독립성(independence appearance)”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으며, 대부분 연구들은 감사인의 독립성을 감소시킬 것으로 보이는 요인을 검토하였다.

18) 이 경우 다른 종류의 인센티브 문제를 발생시키게 될 것이다.

대표적인 연구결과에 의하면, 높은 경쟁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경영자문 업무를 제공하는 소규모의 감사법인은 독립성 상실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었다. Reckers and Stagliano(1981)¹⁹⁾는 감사이외의 회계서비스(예 : 재무제표의 작성 및 검토)를 제공하는 감사법인은 윤리적으로 부적절할 위험이 큰 것으로 보았으며, Knapp(1985)²⁰⁾은 감사대상기업의 재무상태가 감사인의 독립성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았다. Simon and Francis(1988)²¹⁾는 430개 회계법인의 감사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이용하여 최초 3년간 감사수임료 할인이 있을 때, 초기의 감사수임료 감소분(즉, 매물원가)이 회복될 때까지 독립성의 상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Goldman and Baelev(1974)²²⁾는 감사인의 본질적인 역할갈등과 관련하여 감사대상기업의 경영자는 감사인을 고용하거나 해고하고, 감사수임료와 감사업무환경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인을 통제할 수 있으므로 감사인의 독립성이 저하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Shockley(1981)²³⁾는 감사인의 독립성 상실위험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감사전문인간의 경쟁, 경영자문업무의 제공여부, 감사법인의 규모, 계속감사기간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높은 경쟁환경과 경영자문업무를 제공하는 감사집단과 소규모의 감사집단은 독립성 상실위험

19) Reckers, P. M., and A. J. Stagliano, "Non-Audit Service and Perceived Independence : Some New Evidence", *Auditing : A Journal of Practice and Theory*, (1981), pp. 23~27.

20) Knapp, M. C., "Audit Conflict : An Empirical Study of the Perceived Ability of Auditors Resist Management Pressure", *The Accounting Review*, (1985), pp. 202~211.

21) Simon, D. T., and J. R. Francis, "The Effects of Auditor Changes on Audit Fees : Tests of Price Cutting and Price Recovery", *The Accounting Review*, (1988), pp. 255~269.

22) Goldman, A., and B. Barlev, "The Auditor-Firm Conflict of Interest : Its Implications for Independence", *The Accounting Review*, (1974), pp. 707~718.

23) Shockley, R. A., "Perceptions of Auditor's Independence : An Empirical Analysis", *The Accounting Review*, Vol. 56, (1981), pp. 785~800.

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계속감사기간은 독립성 상실위험의 인지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감사인의 업무영역 범위에 따른 상충관계

가. 경쟁(competition)

감사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과 독립성의 관계는 공공정책적인 시사점을 가지므로 그 중요성은 클 것으로 보이며, 감사인간의 경쟁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 다른 견해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미국의 Metcalf 소위원회의 위원은 Big Eight 회계법인이 회계원칙이나 정책의 수립에 큰 영향을 줄 정도로 감사인간의 경쟁이 너무 낮은 것으로 믿고 있으며(U.S. Senate, 1976, pp. 35~46), 미국 상원의 소위원회도 감사서비스시장에서 소수의 공급자가 통제한다면 사실상의 카르텔로서 행동함으로써 경쟁가격 메커니즘을 저해할 것임을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미국공인회계사회(AICPA)의 Cohen Commission은 현재의 경쟁정도가 낮은 것은 아니며, 과다경쟁 가능성이 현재의 감사인에 대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았다. 즉 감사전문인간의 경쟁은 제공되는 감사서비스의 정도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특히 경쟁은 감사집단으로 하여금 감사의 성격이 비독립성에 가까워질 위험을 야기할 수 있으며, 경쟁이 증가함에 따라 고객(client)이 현재의 감사인을 교체할 기회와 유인도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감사인을 변경하는 것은 감사수수료의 최소화로부터 보다 순응적인 감사인을 찾고자 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경쟁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과점이론(oligopoly theory)들은 집중도와 가격간에 양(+)의 관계를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회계학 분야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최소한 특정산업에서 높은 집중도는 시장주도자가 전문성과 관련된 규모의 경제를 나타내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또는 수입료)을 유지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Danos and Eichenseher(1982)²⁴)은 감사서비스 시장에서 규제산업과 비규

제 산업간에 공급자 집중도(즉 경쟁도)를 비교한 결과 규제산업에 대한 감사인의 집중도가 보다 높으며 비규제산업에 대한 집중도는 기간경과에 따라 감소하지만 규제산업에 대한 집중도는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규제산업에서 소수의 감사인이 감사서비스 시장을 지배하는 규모의 경제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결론을 내렸으며, 규모의 경제는 복잡한 규제사항을 다루는 전문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았다.

Pearson and Trompeter(1994)²⁵⁾는 공급자(즉, 회계법인)의 집중도는 수입료와 음(-)의 관계를 나타내어 높은 수준의 집중도는 높은 수준의 가격경쟁을 유발하여 수입료를 낮추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집중도가 경쟁의 대응변수로의 타당성 여부를 추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감사인을 변경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업종별 전문화가 수입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서로의 고객에 대해 시장지배자들 사이에 유의한 수입료 삭감증거가 나타났지만, 비지배자로부터 시장지배자로 감사인을 변경한 고객에 대한 수입료 삭감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시장지배자 사이에는 고객에 대하여 유의한 가격경쟁이 있다는 주장과 일치하며, 높은 수준의 집중도는 반드시 낮은 수준의 가격경쟁(즉, 높은 수입료)을 야기하지는 않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의 감사서비스 시장의 경쟁은 아직까지 소수의 회계법인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경쟁정도는 낮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명곤(2000)²⁶⁾에 의하면, 미국의 Big-6 회계법인과 업무를 제휴하고 있는 국내 회계법인의 감사인의 정신적 독립성이 향상된 것으로 파악하기는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신적 독립성이 견지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직업윤리규정이나 회계감사기준과 같은

24) Danos, P., and J. Eichenseher, "Audit Industry Dynamics : Factors Affecting Changes in Client-Industry Market Shar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1982), pp. 604~616.

25) Pearson, T., and G. Trompeter, "Competition in the Market for Audit Service : The Effect of Supplier Concentration on Audit Fees",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Vol. 11, (1994), pp. 115~135.

26) 이명곤, "회계감사인의 문화와 윤리수준에 관한 연구", 『경영연구』, Vol. 15, (2000), pp. 1~30.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나. 경영자문업무

감사인은 회사가 효율적으로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정분야 혹은 경영 전반에 대하여 자문한다. 이러한 업무는 회사의 회계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단순한 제안에서부터 전산시스템의 도입과 운용, 예산편성 및 관리회계시스템의 설계, 자본조달, 임금과 가격통제, 마케팅전략 및 광고효과분석 등 회사의 모든 분야를 포함한다.

최근 대부분의 회계법인에서는 감사업무와는 독립적으로 경영자문업무를 전담하는 독립부서나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자문업무를 전담하는 감사인들은 특정 전문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또한 많은 회사에 대해 동일한 분야를 자문함으로써 얻게 된 실무적 경험을 배경으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한편, 자문업무와 감사업무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감사에 참여하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어느 정도나마 유지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된다. 자문업무를 맡는 감사인은 회사의 업무활동에 깊이 관여하여 조연자가 아닌 운용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독립성에 의문을 초래하게 될 위험도 존재한다.

경영자문업무는 감사인의 독립성과 관련된 연구에서 가장 일반적인 주제가 되어 왔다. 대부분의 실증연구들은 현장자료 조사 중심의 연구였으며, 가장 폭넓게 인용되는 연구로는 Hartley and Ross와 Simunic 등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들 연구들은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며, 이들 자료는 경영자문업무에 관한 양쪽 입장 모두를 지지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Hartley and Ross(1972)의 연구결과는 경영자문업무의 수행은 감사법인의 독립성을 증가시킨다는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Goldman and Barlev(1974)가 제시한 주장과 일치한다. Goldman and Barlev의 분석은 비밀상적 업무의 제공은 감사인이 고객에게 거의 유일하므로, 고객에 대한 감사인의 가치와 상대적 역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감사법인은 고객의 압력에 보다 잘 대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감사인의 독립성을 보다 잘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객에 대한 경영자문업무의 제공을 반대하는 증거와 주장이 보다 일반적이다²⁷⁾. 첫째, 감사인이 제공하는 자문업무는 고객의 대변자가 될 수 있으므로 독립성을 완전히 유지하기는 힘들다. 둘째, 회계법인은 고객의 성공에 따른 성공적인 조언자로서의 위신을 얻기 위해 고객과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다. 셋째, 실제로 감사인은 의사결정자가 되어 감사법인이 자신의 의사결정에 대해 감사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게 만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감사인은 경영자문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경영자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²⁸⁾. 더욱이 Hartley and Ross(1972)는 고객에 대한 감사법인의 재무적 의존성은 경영자문업무의 수입료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제시하였다. 실증 연구들도 경영자문업무와 독립성은 음(-)의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경영자문업무는 제공하는 특정 업무의 조언가능성(advisability)에 초점을 두어왔으므로, 경영자문업무의 종합적인 정의에 근거한 연구결과를 해석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경영자문업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의에 근거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면, Shockley(1981)은 경영자문 업무를 ‘재무 및 원가회계시스템, 예산 및 재고통제시스템, 기타 회계관련 정보시스템의 설계와 설치’로 정의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또한 경영자문업무와 감사인의 독립성의 관계에 대한 상반된 주장과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으므로,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회계감사와 세무조정 그리고 경영자문업무가 명확히 분화되지 않은 실정에서는 실증적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7) Shulte, A, A, Jr., "Compatibility of Management Consulting and Auditing", *The Accounting Review*, (1965), p. 593.

28) 이와 유사하게, 우리나라의 「공인회계사 직업윤리규정」 제7조에는 정신적 독립성 또는 외관상 독립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하는 상황을 다음의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감사의 결과가 감사인 자신의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 둘째, 자신의 의사결정을 감사하게 되는 상황, 셋째, 피감사회사를 변호하여야 하는 상황, 넷째, 특수관계에서 감사인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다. 감사인 규모

최근 국내의 공인회계사 업계가 업무수입 한도를 놓고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 소규모 회계법인과 개인 회계사들은 자유경쟁원칙을 들어 수입한도 철폐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대규모 회계법인은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감사인의 수에 따른 감사대상회사 규모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규모 회계법인과 개인 공인회계사는 “업무수입한도를 없애면 감사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최근 소액주주권의 강화로 부실감사를 하면 투자자들이 즉각 손해배상을 제기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또 “소송으로 인한 손해배상 재원은 회원들이 기금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형 회계법인들은 업무가 복잡한 대기업을 감사하려면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며 수입한도를 없애면 감사의 질이 낮아져 경영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전문분야별로 회계감사를 하고 있는 대형 회계법인과 개인 공인회계사 몇 명으로 구성된 감사반이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회계법인들은 흔히 규모가 작은 법인보다 독립성 상실에 처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고려되고 있다. 규모효과에 대한 주장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대규모 회계법인은 수입료가 전체 자원의 작은 부분을 구성하기 때문에 소규모 회계법인보다 고객에 대한 의존성이 낮은 경향이 있다. 둘째, 소규모 감사실무 고유의 특성-전형적인 소규모 감사대상 기업의 속성이나 보다 개인적 유형의 서비스 지향경향과 고객과의 밀접한 관계-은 감사인의 독립성 상실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고객의 상실과 경영자문업무 수익의 영향은 소규모 회계법인보다는 대규모 회계법인에게 크지 않을 것이다.

다음으로, 대규모 회계법인은 독립된 경영자문업무 전담부서를 갖고 있으므로, 감사인과 컨설턴트의 분리는 경영자문업무가 감사인의 독립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감소시킬 것이다. 그러나 소규모 회계법인에서 감사인과 컨설턴트는 동일

인이므로, 소규모 회계법인의 독립성 상실위험은 클 것으로 보이며 이를 지지하는 실증적 연구들도 제시되어 왔다.

회계법인의 규모와 관련하여 국내 감사시장에서 소규모 회계법인(또는 개인 공인회계사)과 대규모 회계법인 간의 수입한도 갈등이 있으며, 업계에서는 회계법인의 외형보다는 양질의 저렴한 감사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회계법인의 규모와 감사인의 독립성에 대한 풍부한 실증연구를 통해 이들 논점에 대한 직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3장 선행연구의 검토

제1절 재량적 발생액 관련 연구

감사와 비감사서비스의 병행이 감사인의 피감사기업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증가시켜 실제로 감사인의 독립성이 저하되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감사인의 독립성 저하가 결과적으로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 따라 종속변수로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한 연구와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표명한 감사의견을 이용한 연구로 나누어진다.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표명한 감사의견을 이용한 연구는 비감사 서비스가 증가할수록 감사인의 독립성이 저하되고 이에 따라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감사의견으로 표명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가정한다. 이에 비하여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한 연구에서는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되면 감사품질이 저하되고 이것은 재량적 발생액의 증가로 나타난다고 가정한다.

감사인의 피감사기업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감사인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첫째로, 비감사보수가 총보수(= 감사보수 + 비감사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경제적 의존도로 이용한 것과 둘째는 개별기업의 입장이 아니라 감사인의 입장에서 특정 개별기업에 대한 상대적인 경제적 의존도로 이용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감사인의 경제적 의존도를 비감사보수가 총 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이용하여 분석한 연구는 Dee et al.(2002), Frankel et al.(2002) 그리고 Ashbaugh et al.(2003)의 해외연구가 있으며, 특정 개별기업에 대한 상대적인 경제적 의존도를 이용하여 분석한 연구로는 Chung and Kallapur(2001)와 국내연구로는 최종학 등(2005)이 있다.

Dee et al.(2002)²⁹⁾은 S&P 500에 속한 기업을 표본으로 하여 재량적 발생액을

29) Dee, C., A. Lulseged, and T. Nowlin, "Earnings Quality and Auditor Indepen-

감사인의 독립성의 대응치로 분석한 결과, 피감사기업으로부터 받는 총 수수료 중에서 비감사서비스에 대한 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클수록 이익을 증가시키는 재량적 발생액이 많음을 발견하였다. 이들은 감사보수 대비 비감사서비스의 보수가 많을수록 감사인은 경영자의 이익조정에 비교적 덜 엄격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 Frankel et al.(2002)³⁰⁾도 감사인의 피감사기업에 경제적 의존도를 상기 연구와 동일하게 독립변수로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동일 감사인이 제공하는 비감사서비스가 많은 기업일수록 기업의 발표 이익이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치와 동일하거나 예측치를 약간 초과하는 경향이 있으며, 재량적 발생액의 절대값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감사보수가 공시되는 시점의 주가반응을 ‘비기대 비감사보수가 총 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주식수익률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감사서비스가 감사인과 피감사회사의 경제적 유대관계(economic bond)를 강화시켜서 감사인의 독립성이 약화되므로 투자자들이 이를 반영하여 주가를 저평가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비감사서비스의 제공이 감사인의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Frankel et al.(2002)의 연구를 재검토한 Ashbaugh et al.(2003)³¹⁾은 비감사서비스의 정도를 ‘비감사보수/총보수’ 비율을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재량적 발생과 유의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감사보수/총보수’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실제이익이 재무분석가의 예측치와 유사하다는 Frankel et al.(2002)의 결과와는 달리 그런 경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감사서비스가 공시되는 시점에 ‘비

dence : An Examination Using Non-audit Fee Data", Working Paper, Florida State University, (2002).

30) Frankel, R., M. Johnson, and K. Nelson, "The Relation between Auditor's Fees for Non-Audit Services and Earnings Management", Working Paper, MIT Sloan School of Business, (2002).

31) Ashbaugh, H. R. LaFond, and B. Mayhew, "Do Non-Audit Services Compromise Auditor Independence?", Working Paper, University of Wisconsin, (2003).

감사보수/총보수' 비율과 주가반응도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Ashbaugh et al.(2003)은 비감사서비스와 감사인의 독립성간에는 특별한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유사한 국내연구로 권수영 등(2004)³²⁾은 감사인이 피감사기업에 대하여 비감사서비스까지 제공함으로써 인해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되는지를 수정된 Jones 모형을 이용한 재량적 (유동)발생액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들은 2001년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상장기업 및 코스닥 등록기업의 과거 3개년간의 용역계약을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비감사서비스의 제공여부나 금액의 크기가 재량적 발생액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세무조정 이외의 서비스의 재량적 발생액에 대한 회귀계수는 더미변수나 금액변수 모두에서 유의적인 음(-)의 부호를 보였다. 비감사수수료 비율이나 피감사회사의 중요성을 이용한 분석에서도 재량적 발생액에 대한 양(+)의 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일부 분석에서는 오히려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스닥 등록기업의 경우에도 비감사서비스로 인해 재량적 발생액이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재량적 발생액의 추정방법, 고객의 경제적 중요성, 감사인의 평판 및 상장·등록의 구분에 관계없이 일관성 있게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비감사서비스가 감사인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견해를 지지할 실증적 결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일부 다중회귀분석에서 재량적 발생액과 비감사서비스 변수들간에 유의적인 음(-)의 관계가 나타났는데, 이는 비감사서비스로 인해 피감사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감사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된다는 지식의 전이(knowledge spillover)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코스닥 등록기업의 경우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비감사서비스가 이익과 감사의 품질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감사인의 경제적 의존도를 비감사서비스 보수가 총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32) 권수영·손성규·이은철, “비감사서비스가 감사인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 연구』, 제29권 제2호, (2004), pp. 251~280.

이용하지 아니하고 특정 기업으로부터의 총수수료가 감사인의 감사관련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피감사기업의 중요도로 하여 이를 재량적 발생액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도 있다.

Chung and Kallapur(2001)³³⁾는 피감사기업의 중요도를 측정하여 실증분석결과, 재량적 발생액과 피감사기업의 중요성간에는 유의적인 관계가 없었으며, 피감사기업이 이익조정을 할 유인, 감사인의 전문성, 이사회의 내부 영향력 등을 이용하여 표본을 분할한 경우에도 유의적인 발견을 할 수 없었다.

이와 유사한 국내연구로 최종학 등(2005)³⁴⁾은 감사인의 경제적 의존도를 첫째, 회계법인별 매출액(혹은 회계감사 매출액) 대비 특정 피감사기업으로부터 받은 감사보수 둘째, 회계법인별 매출액(혹은 회계감사 매출액) 대비 특정 피감사기업으로부터 받은 총보수(= 감사보수 + 비감사보수)로 측정하였다. 감사인의 독립성을 판단하는 측정치는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였으며, 그 추정과정은 수정 Jones 모형을 따랐다. 실증분석결과, 감사보수 및 총보수로 측정한 감사인의 특정 고객기업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와 피감사회사의 이익조정 사이에는 유의적인 관련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 결과는 민감도 분석결과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으며, 감사 및 비감사서비스를 동시에 동일 감사인으로부터 구매한 기업들로 표본을 한정하여 분석하여 보아도 결론은 동일하였다. 즉 국내 감사시장에서 특정 고객에 대한 감사인의 경제적 의존도가 클수록 감사인의 독립성이 저해될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발견할 수는 없었다.

Reichelt and Francis(2002)는 Non-Big 5 감사인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감사인의 특정 고객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와 이익조정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Non-Big 5 감사인의 경우, Big 5 감사인에 비하여 고객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개별 고객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더 클 수 있다. 따라서 Non-Big 5 감사인의 경우가 경제적 의존도에 따라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더

33) Chung, H. and S. Kallapur, "Client Importance, Non-Audit Services, and Abnormal Accruals", Working Paper, Purdue University, (2001).

34) 최종학·박종일·전규안, "감사인의 피감사회사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감사인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Vol. 30, (2005), pp. 121~154.

크다고 보았으나, 연구결과에 따르면 몇몇 이상치를 제외하고는 특정 고객에 대한 감사인의 경제적 의존도와 피감사회사의 재량적 발생액이나 총발생액 사이에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제2절 감사품질과 감사인의 규모 관련 연구

미국에서는 대형감사인(Big firm)과 비대형감사인(Non-Big firm) 사이에 감사품질의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비대형감사인들과 규제기관들은 감사인의 규모가 감사품질과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이나 많은 선행연구 결과에서는 대체로 감사인 규모에 따라 감사품질에 차이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DeAngelo(1981)는 감사인 규모와 감사품질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고객 회사 수가 많은 대형감사인일수록 특정 피감사인에 대한 독립성이 강화되고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할 동기가 줄어들어 감사품질이 높아진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Palmrose(1988)³⁵⁾는 감사인들의 소송관련 자료들의 발생과 종결자료를 분석하여 비대형법인(Non-Big 8)들이 대형법인(Big 8)들보다 더 많은 소송사건에 연루되어 감사품질이 낮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관·백원선(1998)³⁶⁾이 감사인의 유형을 Big 6 제휴법인과 국내법인으로 구분하고 이들이 제공하는 감사품질의 차이를 감사보수와 감사기간을 이용하여 연구한 바 있다. 연구결과 두 그룹간의 감사보수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Big 6 제휴법인이 국내법인보다 많은 감사시간을 투입하는 것으로 미루어 감사품질이 우수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던져준 바 있다.

나중길·최관(2003)³⁷⁾은 회계발생액과 차별적 감사수요를 주제로 하여 미국의

35) Palmrose Z. V., "An Analysis of Auditor Litigation and Audit Service Quality", Accounting Review, Vol. 8, (1988), pp. 55~73.

36) 최관·백원선, "감사인의 유형과 감사품질 : 감사보수와 감사기간을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제23권 제2호, (1998), pp. 49~75.

37) 나중길·최관, "회계발생액과 차별적 감사수요", 『회계학연구』, 제28권 제1호,

Big 5 제휴법인과 국내법인(비제휴법인) 사이의 감사품질에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Big 5 제휴법인의 재량적발생액이 국내법인의 재량적발생액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Big 5 제휴법인의 감사품질이 국내법인보다 우수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효익외 3인(2002)³⁸⁾은 Big 5 감사인과 Non-Big 5 감사인 사이에 IMF 외환위기 이후 보수적 회계처리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Big 5 감사인이 높은 손해배상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정보이용자에게 매력적인 소송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오류와 관련된 감사실패 위험과 소송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보다 보수적인 성향을 갖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외국의 유명회계법인과 제휴한 국내 회계법인과 그렇지 않은 국내 회계법인간에 감사품질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는 연구도 다수 있다. 박종일·이명곤·원형연(1999)³⁹⁾은 감사인의 유형을 Big 6, Local Big, Local Small, 산업별 전문 감사인과 기타 감사인 등의 5가지로 분류하고 각 감사인이 감사하는 피감사 회사들의 재량적발생액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감사품질의 차이를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Big 6 제휴법인과 국내법인 사이에 유의할 만한 감사품질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나종길·최기호(2000)⁴⁰⁾는 재량적발생액과 비적정 감사의견 간의 관계를 감사품질의 한 척도로 이용하여 감사품을 평가하고 이러한 감사품질이 Big 6 제휴법인과 Non-Big 6 법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재량적발생액과 비적정 감사의견 간의 관계는 수정된 Jones 모형과 현금흐름(CFO) 모형에서 모두 Big 6와 Non-Big 6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 pp. 1~30.

38) 이효익·정영진·김한수·문상혁, “보수주의 적용과 감사인간의 품질차이 연구”, 『회계와 감사연구』, 제38호, (2002), pp. 1~41.

39) 박종일·이명곤·원형연, “재량적발생액을 이용한 감사인의 감사품질 분석”, 『회계와 감사연구』, 제35호, (1999), pp. 289~319.

40) 나종길·최기호, “이익조정과 감사의견”, 『한국회계학회 동계학술연구발표회 발표논문집』, (2000), pp. 181~214.

정석우·노준화(2000)⁴¹⁾는 감사인 변경방향과 재량적발생액과의 인과관계 분석을 통하여 감사인간의 감사품질 차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감사인을 Non-Big 6에서 Big 6로 상향 변경한 기업과 Big 6에서 Non-Big 6로 하향 변경한 기업의 재량적발생액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Big 6 감사인과 Non-Big 6 감사인 사이에 분명한 감사품질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중성·손성규(2000)⁴²⁾는 감사의견 표명 후 감사인이 부담하게 될 잠재적 비용이 감사의견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피감사회사의 파산확률이 높을수록 감사인이 비적정의견을 제시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피감사회사의 규모가 클수록 적정의견을 제시하였다가 감리에서 지적되는 확률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Big 6와의 제휴여부가 감사품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김문철·황인태(1998)⁴³⁾는 개정 전 기업회계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전기손익수정항목을 이용하여 감사인의 감사품질이 피감사회사 경영자의 이익조정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감사인 그룹을 Big 6, 국내 대형회계법인(Local Big), 합동회계사무소(Local Small) 등의 3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감사인이 감사하고 있는 피감사회사들이 전기손익수정금액에 서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Big 6와 Local Big 사이에는 감사품질에 차이가 없었으나 Big 6와 Local Small, Local Big과 Local Small 사이에는 감사품질에 유의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의 많은 관련 연구들이 다양한 지표를 이용하여 감사인 규모와 감사품질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연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두 변수 간의 사이의 연관성을 일관되게 주장할 수 있는 연구결과는 아

41) 정석우·노준화, “감사인 변경방향이 재량적발생액에 미치는 영향”, 『한국회계학회 동계학술연구발표회 발표논문집』, (2000), pp. 215~240.

42) 박중성·손성규, “감사의견 표명 후 감사인이 부담하게 될 잠재적 비용이 감사의견 형성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25권 제3호, (2000), pp. 55~77.

43) 김문철·황인태, “감사의 품질차이가 전기손익수정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23권 제2호, (1998), pp. 1~26.

직까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3절 세무조정 품질과 세무조정대리인 규모 관련 연구

주로 조세회피는 납세자가 주도하지만 세무신고를 대리하는 세무조정대리인에 의하여도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법인세무조정도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회계감사의 품질에 대한 연구와 유사하다고 보여지는 세무조정대리인의 세무조정 품질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세무조정대리인에 대한 독립성이나 적격성의 요구가 감사인보다도 덜 엄격하다고 전제할 경우, 세무조정대리인의 규모나 능력에 따라 세무조정 품질에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정대리인의 규모나 명성이 세무조정 품질과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거의 없는 반면 세무조정대리인의 의사결정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다수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이양현 등(1999)⁴⁴⁾은 설문조사 기법을 사용하여 세무조정대리인의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잠재적인 조세절감액, 세무조사 가능성, 고객의 중요성 등이 세무조정대리인의 세무신고 관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춘래·김종원(2002)⁴⁵⁾은 우리나라 세무전문가들의 의사결정행태를 자격증 소지여부, 실무경험의 정도, 위험선호도 및 성별 등을 변수로 하여 설문조사에 의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세무전문가들은 공인자격증 소지자이거나 위험선호도가 높을수록 납세자에게 유리한 응답을 하였고 실무경력이 많을수록 납세자에게 불리한 응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누락보다는

44) 이양현·이선표, “세무조정대리인의 세무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세무학연구』, 제13권, (1999), pp. 7~43.

45) 박춘래·김종원, “세무전문가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회계저널』, 제11권 제2호, (2002), pp. 89~109.

비용 과대계상에 대해 보다 납세자들에게 유리한 측면에서 응답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세무조사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면 조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전태영(2002)⁴⁶⁾은 개업세무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최근에 법이 개정된 사례의 경우가 개정되지 않은 사례에 비하여 의사결정의 오류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외에도 사전에 해당 과제를 다루어 본 경험이 있는 경우 오류가 낮게 나타났으며, 과세의 성격이 납세자가 회계처리나 법률적 행위를 하기 전에 세무와 관련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는 단계인 세무 계획 과제인지 아니면 세무와 관련된 원인행위가 이미 완료된 상황을 의미하는 세무순응 과제인지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하여 보면 법인세 납부를 의식한 이익조정이나 세무조정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이 경우 법인세 납부액이 중요한 고려요소 중의 하나인 것이 실증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리고 다소의 견해 차이는 있으나 감사인의 규모에 따라 감사품질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과 세무조정대리인의 경력, 전문성, 의사결정행태 등에 따라서 세무조정 품질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의 특성과 법인세추징세액과의 관련성을 체계적으로 규명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고 충분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자료 등의 수집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법인세추징세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추정되는 수집 가능한 자료들을 분석함으로써 법인세추징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46) 전태영, “세무조정대리인의 의사결정행태에 관한 연구”, 『회계학연구』, 제27권 제3호, (2002), pp. 73~99.

제4장 가설의 설정과 연구방법

제1절 가설의 설정

제3장의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감사인의 독립성과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는 감사의견, 감사인의 교체, 재량적발생액 및 감사보수와 비감사서비스 등을 감사인 독립성에 대한 대용치(proxy)로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이들 대용치와 함께 다양한 지표를 이용하여 감사인의 독립성에 관한 연구는 독립성과 감사품질간의 관계에 대해 일관된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우리나라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회사가 과세표준의 근거로 제출하는 재무제표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할 것을 규정(법인세법 제60조)하고 있다. 따라서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근거로 이루어지는 법인세조정계산 등의 세무조정 품질은 감사품질과 관련이 있으며, 감사인 및 세무조정인 간의 관계도 사후적으로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여부를 추정하는 데 의미가 있다.

조세회피는 주로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행하여지지만, 감사인의 의견표명이 이루어진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여 납세자의 세무신고를 대리하는 세무조정인에 의하여도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감사품질에 관한 연구와 유사하다고 보여지는 세무조정 품질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감사인보다도 세무조정인에 대한 독립성이나 적격성의 요구가 덜 엄격하다고 할지라도 세무조정인의 규모나 능력에 따른 세무조정 품질에는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나, 현재 세무조정인의 규모나 명성이 세무조정 품질과의 관련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찾아보기가 거의 어려운 현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감사인의 독립성 및 감사품질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과세당국의 법인조사에 의해 결정된 법인세추징세액을 감사인의 독립성에 대한 대용치로 하여 감사인 규모, 세무조정인 규모 및 감사인-세무조정인의 일치여부가 감사인의 독립성과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1. 감사인 규모

본 논문에서는 먼저 감사인 독립성에 대한 대응치로서의 법인세추징세액과 감사 및 세무조정 품질과의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이는 법인세 납세의무자에 의해 작성된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고 그 적정성에 대한 감사의견이 독립성을 확보한 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에 의해 표명되었다면, 당해 법인의 법인조사 결과에 따른 추징세액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적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감사인의 독립성은 감사인의 규모, 즉 대형감사인과 비대형감사인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자본시장의 속성상, 증권선물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 등에 공개된 상장기업(listed company)은 일반적으로 이익을 과다 계상하는 방향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자 하는 유인이 발생한다. 따라서 감사인은 기업회계기준에 근거하여 적정하지 못한 이익 과다계상 목적의 분식회계 또는 재무제표 작성을 견제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감사품질과 법인세추징세액 간에는 서로 유의한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비상장기업은 상장기업의 경우와 다를 수 있다. 비상장기업은 자본시장을 통한 자본조달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재무보고 목적보다는 세무보고 목적에 초점을 두고 이익을 과소 계상하는 방향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려는 유인이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 감사인은 이익 과소계상 목적의 역분식회계 또는 재무제표 작성을 견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감사품질과 법인세추징세액 간에는 서로 유의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감사품질과 관련한 이전의 선행연구에서는 감사품질의 대응변수로 감사인 규모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감사품질의 대응변수로서 감사인의 규모가 크고 명성이 있는 대형감사인과 비대형감사인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감사인 독립성에 대한 대응치로서의 법인세추징세액과 감사품질간의 관계를 검토하기 위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H1 : 감사인 규모는 감사인 독립성 대응치로서의 법인세추징세액의 크기와 관련성이 있다.

2. 세무조정인 규모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회계처리하고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인이 독립성 확보와 함께 높은 감사품질을 유지하면서 감사가 수행되었다고 가정하자. 이러한 과세근거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세무조정인에 의한 법인세조정계산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게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납세자는 사후 법인조사를 실시하더라도 세무조정 오류 등으로 인한 법인세추징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감사인의 감사품질뿐만 아니라 법인세 조정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조정인의 조정품질에 의하여도 법인조사에 따른 추징세액의 크기가 영향을 받는다. 세무조정인의 조정품질에 대한 국내에서의 연구는 많지 않으나, 대체적인 연구결과는 조정업무 수행 경험이 짧거나 위험선호도가 높은 세무조정인일수록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세무조정 행태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이 비감사서비스의 일환으로 경영자문과 함께 법인세 조정계산 등의 세무 자문과 지원을 할 수 있다. 세무조정인으로서의 대형감사인 또는 대형세무조정인은 특성상 세무조정에 따르는 위험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고 세무조정 품질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개인 세무조정인이나 기타 비대형감사인 또는 비대형세무조정인은 세무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대형감사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특화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는 세무조정인의 규모만으로는 세무조정품질을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여 법인세추징세액과 세무조정품질 간의 관련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H2 : 세무조정인의 규모는 감사인 독립성 대응치로서의 법인세추징세액과 관련성이 있다.

3. 감사인과 세무조정인의 일치여부

기업은 자신의 외부감사인에게 비감사서비스로서 법인세 조정계산을 의뢰하기 보다는 별도의 세무조정인을 선임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기업이 세무조정 능력이 우수하거나 또는 과세당국에 대한 대응능력이 우수한 세무전문가를 선호하는 경향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과세당국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의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라면, 감사인과 세무조정인이 일치하는 경우보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법인세 조정계산시의 오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적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리고 이는 감사인과 세무조정인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과세당국의 법인조사에 따른 추징세액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반면, 감사인과 세무조정인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상의 회계이익과 과세표준을 연계하여 조정을 실시함으로써, 이후 과세당국의 법인조사 가능성에 대해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과세당국에 의해 적발될 수 있는 문제점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감사인 독립성 대응치로서의 법인세추징세액과 감사인-세무조정인 일치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H3 : 감사인과 세무조정인의 동일인 여부는 감사인 독립성 대응치로서의 법인세추징세액과 관련성이 있다.

제2절 변수의 측정과 표본의 선정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과세당국의 법인조사에 의한 법인세추징세액을 감사인의 독립성에 대한 대응치로 하여 감사인과 세무조정인의 규모 및 감사인-세무조정인 일치여부와와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이하에서는 연구가설에 도입된 변수에 대한 정의와 회귀분석을 위한 변수의 측

정방법과 표본의 선정내용을 제시한다.

1. 법인세추징세액

먼저 법인조사에 의한 세무 추징세액은 크게 법인세추징세액, 법인 관련 추징세액 및 기타 추징세액으로 구분된다. 먼저 법인세추징세액은 법인의 과세소득이 증가하여 추가징수 여부가 결정되는 세액을 말한다. 다음으로 법인관련 추징세액은 법인이 부담하는 세금이긴 하지만 법인의 과세소득과는 무관한 세금이다. 마지막으로 기타 추징세액은 특정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발생하는 추징세액이긴 하지만 해당 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되지 않고 제3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추징세액을 의미한다⁴⁹⁾.

이 세 가지 유형의 추징세액은 각각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과 직접 관련이 있는 법인세추징세액만을 사용하고자 한다.

2. 감사인의 규모

본 논문에서는 감사품질의 대용변수로 이전의 연구에서 많이 적용하였던 감사인의 규모를 사용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대형 회계법인과 제휴가 되어 있는 감사법인들을 대형법인(Big 5)으로, 제휴가 되어있지 아니한 감사법인들을 비대형법인(Non-Big5)으로 구분하였다. 국내 회계법인의 미국 대형회계법인과 제휴 현황은 상황에 따라 제휴와 결별이 이루어져 왔는데, 연도별 제휴 현황은 <표 4-1>과 같다.

49) 매출누락이 적발되면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세 등이 추가징수 결정된다.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는 법인관련세액으로, 대표이사의 소득세는 기타의 추징세액으로 분류된다.

<표 4-1> 국내 회계법인의 외국 대형회계법인과의 제휴현황

구 분	PWC	Deloitte	Arthur Andersen	Ernst and Young	KPMG
1997년	삼일	안건	안진	영화	산동
1998년	삼일	안건	안진	영화	산동
1999년	삼일	안건	안진	영화	산동
2000년	삼일	안건	안진	영화	삼정
2001년	삼일	안건/하나	안진	영화	삼정
2002년	삼일	안건/하나/안진		영화	삼정

자료 : 한국공인회계사회.

3. 세무조정인의 규모

우리나라에서는 공인회계사가 세무사 자격을 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공인회계사들로 구성된 감사법인이 비감사서비스의 일환으로 세무조정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세무조정인의 세무조정 품질을 대신할 대용변수로 세무조정인의 규모를 사용한다. 또한, 세무조정인의 규모가 크거나 작다고 할 수 있는 절대적 기준이 없어서 본 연구에서는 감사인의 규모를 구분할 때 사용한 기준을 원용하여 <표 4-1>에서와 동일하게 미국의 대형 회계법인과 제휴가 되어있는 감사법인들을 대형세무조정인(Big 5)으로 제휴가 되어있지 아니한 감사법인들이나 개인들을 비대형세무조정인(Non-Big 5)으로 구분한다.

4. 감사인과 세무조정인의 일치여부

감사인과 세무조정인은 원칙적으로 두 서비스를 받는 법인에게 선택권이 주어져 있다. 일반적으로 감사서비스가 세무조정서비스보다는 많은 인력과 기간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들의 일치여부가 세무조정 품질에 영향을

미쳐 법인세추징세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일치하는 경우와 일치 하지 않는 경우 두 가지로 구분하여 더미변수로 사용한다.

5. 표본의 선정

본 논문에서의 실증분석을 위한 표본의 선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1997~2000 회계연도 사이에 법인세 납부실적이 있는 기업으로서 1999~2003년도 사이에 1997~2000 회계연도에 대하여 과세당국에 의해 법인세조사가 이루어진 기업으로 한다. 다음으로는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중 법인세추징세액이 0원이 아닌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중 신고납부액 자료가 확보된 기업으로 한다.

제3절 연구모형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감사인의 독립성에 대한 대용치(proxy)로서 과세당국의 법인조사 후 결정되는 법인세추징세액이 감사인의 규모, 세무조정인의 규모 및 감사인과 세무조정인의 동일인 여부에 따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연구가설 H1, H2 및 H3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한다.

$$renftax_{i,t} = a_0 + b_1 lsales_{i,t} + b_2 bigaud_{i,t} + b_3 bigtax_{i,t} + b_4 audtax_{i,t} + b_5 rtax_{i,t} + e_{i,t}$$

단, $renftax_{i,t}$: 기업 i의 t년도 법인세추징세액을

$lsales_{i,t}$: 기업 i의 t년도 신고외형의 로그값

$bigaud_{i,t}$: 기업 i의 t년도 감사인 규모(1=Big, 0=Non-big)

$bigtax_{i,t}$: 기업 i의 t년도 세무조정인 규모(1=Big, 0=Non-big)

$audtax_{i,t}$: 기업 i 의 t 년도 감사인-세무조정인 일치여부
(1=일치, 0=비일치)

$rtax_{i,t}$: 기업 i 의 t 년도 신고외형 대비 신고납부세액

종속변수($renftax_{i,t}$)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에 사용한다.

첫째는 과세당국의 법인조사에 따른 표본기업의 법인세추징세액을 당해기업의 신고외형으로 나눈 비율(변수명: $renftax1_{i,t}$)을 사용한다. 두번째는 과세당국의 법인조사에 따른 표본기업의 법인세추징세액을 당해기업의 신고납부세액으로 나눈 비율(변수명: $renftax2_{i,t}$)을 사용한다. 이들 두 종속변는 감사인의 독립성이 저하되면 과세당국의 법인조사 후 추가징수액의 크기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의 연구가설 H1, H2, H3를 검증하기 위해 이용되는 주요 독립변수는 감사인의 규모($bigaud_{i,t}$), 세무조정인의 규모($bigtax_{i,t}$), 감사인-세무조정인의 일치여부($audtax_{i,t}$) 및 통제변수로서 해당표본의 신고납부세액을($rtax_{i,t}$)을 이용한다.

제5장 실증분석 결과

본 장에서는 연구모형에 실증분석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살펴본다. 제1절에서는 먼저 표본 및 변수의 특성을 분석한다. 제2절에서는 본 연구의 검증 모형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본다.

제1절 표본 및 변수의 특성

1. 표본대상법인의 형태별·지역별 분포

<표 5-1> 표본대상의 형태별·지역별 분포

형태 지역	내국법인	외투법인	외국법인	계(%)
서울	601(36.42%)	39(2.36%)	28(1.70%)	668(40.48%)
부산	216(13.09%)	44(2.48%)	5(0.30%)	262(15.88%)
대구	200(12.12%)	0(0.00%)	0(0.00%)	200(12.12%)
대전	108(6.55%)	26(1.58%)	0(0.00%)	134(8.12%)
충부	322(19.52%)	31(1.88%)	0(0.06%)	353(21.39%)
광주	31(1.88%)	1(0.06%)	1(0.06%)	33(2.0%)
계(%)	1,478(89.58)	138(8.36%)	34(2.06%)	1,650(100.0%)

* ()의 구성비는 전체표본에 대한 구성비 임.

* 조사대상연도는 1995년부터 2000년까지이며, 과세연도는 2001년부터 2004년도임.

본 논문에서의 표본기업은 과세 당국에 의해 법인조사가 이루어지고 법인세가

추가징수가 결정된 기업들이다. <표 5-1>은 표본기업의 형태별·지역별 분포이다.

<표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1,650개의 표본 중 약 40.5%에 해당하는 668개 법인은 서울에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하는 중부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전체표본의 21.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이어서 부산, 대구, 대전, 광주의 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법인의 형태로는 전체의 약 90%에 해당하는 1,478개 기업이 내국법인인 것으로, 그리고 외투법인은 138개(8.36%), 외국법인은 34개(2.06%)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2. 표본대상법인의 추정세액 규모

표본기업의 법인형태별로는 신고외형 대비 법인세부담세액은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이나 외투법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외형 대비 추정법인세 역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은 각각 2.8%, 1.0%인데 반해 외국법인은 6.9%로 비교적 높은 법인세추징율을 보였다. 법인세부담세액 대비 추정법인세는 외투기업이 평균 70.2%인데 반해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은 각각 158%와 246%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외국법인이 신고외형 대비 법인세부담율, 신고외형대비 법인세추징율, 법인세부담세액대비 법인세추징율에서 모두 내국법인이나 외투법인보다 현저히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지역별로는 신고외형 대비 법인세 부담률의 경우 경기도를 중심으로 하는 중부지역과 서울이 2.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지역은 1% 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고외형 대비 법인세추징율 역시 중부지역이 7.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법인세부담세액 대비 법인세추징율은 부산과 중부지역이 각각 227%와 193%로 분석되었고 대구지역이 67%로서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부산지역에서 다른 지역보다 외형대비 법인세 부담세액도 많고 신고외형 대비 법인세 추정세액도 많을 뿐 아니라 법인세 부담세액 대비 법인세 추정세액도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5-2> 표본대상의 형태별 및 지역별 법인세추징율의 평균

Panel A : 형태별 법인세추징율 (단위 : 백만원)				
형태 지역	평균외형	신고외형 대비 법인세부담율	신고외형 대비 법인세추징율	법인세부담 세액 대비 법인세추징율
내국	365,140	1.6%	2.8%	157.7%
외투	441,864	1.5%	1.0%	70.2%
외국	125,136	2.8%	6.9%	245.6%

Panel B : 지역별 법인세추징율				
형태 지역	평균외형	신고외형 대비 법인세부담율	신고외형 대비 법인세추징율	법인세부담 세액 대비 법인세추징율
서울	650,928	2.0%	1.9%	145.8%
부산	83,612	1.1%	1.5%	227.5%
대구	221,042	0.9%	0.3%	67.7%
대전	64,862	1.0%	0.4%	74.1%
중부	183,337	2.1%	7.6%	193.0%
광주	926,216*	1.1%	0.4%	95.8%

* 광주의 경우, 표본기업 중 신고외형이 11조원이 넘는 표본이 포함되었음.
해당표본을 제외하면, 외형 평균은 약 606.972 백만원 산정됨

3. 감사인 및 세무조정인 분석결과

1) 감사인 규모

표본대상의 형태별 및 지역별 감사인 분포를 분석한 결과는 <표 5-3>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국의 대형 회계법인과 회원제휴(membership)관계를 가지고 있는 대형감사인이 회계감사를 수행한 기업은 총 1,036개 기업(62.79%)이고

나머지 약 37.2%에 해당하는 기업은 비대형감사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국법인이나 외투법인보다도 외국법인이 대형감사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았다. 한편 지역별로는 전반적으로 대형감사인의 선임비율이 높았으나, 광주에 다른 지역과 달리 비대형감사인의 선임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5-3> 표본대상의 형태별·지역별 감사인 분포

Panel A : 형태별 감사인 분포			
	대형감사인	비대형감사인	계(%)
내국	915(55.45%)	563(34.12%)	1,478(89.58%)
외투	92(5.58%)	46(2.79%)	138(8.36%)
외국	29(1.76%)	5(0.30%)	34(2.06%)
계(%)	1,036(62.79%)	614(37.21%)	1,650(100.00%)

Panel B : 지역별 감사인 분포			
	대형감사인	비대형감사인	계(%)
서울	458(22.76%)	210(12.73%)	668(40.48%)
부산	171(10.36%)	91(5.52%)	262(15.88%)
대구	123(7.45%)	77(4.57%)	200(12.12%)
대전	74(4.48%)	60(3.64%)	134(8.12%)
충부	196(11.08%)	157(9.52%)	353(21.39%)
광주	14(0.85%)	19(1.15%)	33(2.0%)
계(%)	1,036(62.79%)	614(37.21%)	1,650(100.00%)

* ()의 구성비는 전체표본에 대한 비율임.

2) 세무조정인 규모

표본기업의 세무조정인 규모에 대한 분포는 <표 5-4>와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태별로는 외국법인은 세무조정인 역시 대형세무조정인의 선임율이 높으나 내국법인과 외투법인은 비대형세무조정인의 선임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4> 표본대상의 형태별·지역별 세무조정인 분포

Panel A : 형태별 세무조정인 분포			
	대형세무조정인	비대형세무조정인	계(%)
내국	310(18.79)	1,168(70.79%)	1,478(89.58%)
외투	42(2.55%)	96(5.82%)	138(8.36%)
외국	23(1.39)	11(0.67%)	34(2.06%)
계(%)	375(22.73)	1,275(77.27%)	1,650(100.00%)

Panel B : 지역별 세무조정인 분포			
	대형세무조정인	비대형세무조정인	계(%)
서울	189(11.45%)	479(29.03%)	668(40.48%)
부산	52(3.15%)	210(12.73%)	262(15.88%)
대구	54(3.27%)	146(8.85%)	200(12.12%)
대전	36(2.18%)	98(5.94%)	134(8.12%)
충부	44(2.67%)	309(18.73%)	353(21.39%)
광주	0(0.00%)	33(2.00%)	33(2.0%)
계(%)	375(22.73%)	1,275(77.27%)	1,650(100.00%)

* ()의 구성비는 전체표본에 대한 비율임.

지역별 역시 모든 지역에서 비대형세무조정인 선임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광주지역의 경우 표본기업은 대형세무조정인의 선임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본대상은 세무조정인을 선임하는데 있어서 대형 세무조정인보다는 비대형 세무조정인을 선임하는 빈도가 77.27%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감사인과 세무조정인 일치 여부

<표 5-5> 표본대상의 형태별·지역별 감사인-세무조정인 일치여부 분포

Panel A : 형태별 감사인-세무조정인 동일여부			
	동일	비동일	계(%)
내국	420(26.06%)	1,048(63.52%)	1,478(89.58%)
외투	48(2.91%)	90(5.46%)	138(8.36%)
외국	20(1.21%)	14(0.85%)	34(2.06%)
계(%)	498(30.18%)	1,152(69.82%)	1,650(100.00%)

Panel B : 지역별 감사인-세무조정인 동일여부			
	동일	비동일	계(%)
서울	219(13.27%)	449(27.21%)	668(40.48%)
부산	61(3.70%)	201(12.18%)	262(15.88%)
대구	88(5.33%)	112(6.79%)	200(12.12%)
대전	56(3.39%)	78(4.73%)	134(8.12%)
중부	73(4.42%)	280(16.97%)	353(21.39%)
광주	1(0.06%)	32(1.94%)	33(2.0%)
계(%)	498(30.18%)	1,152(69.82%)	1,650(100.00%)

* ()의 구성비는 전체표본에 대한 비율임.

감사인과 세무조정인의 동일인 여부에 대한 분포는 <표 5-5>와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본대상 중 약 30.2%에 해당하는 498개 기업은 감사인과 세무조정인이 동일인이고, 나머지 약 69.8%에 해당하는 1,152개 기업은 감사인과 세무조정인이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형태별로 보면 외국법인만이 감사인과 세무조정인이 동일인인 경우가 더 많았으며, 서울지역보다도 지방으로 갈수록 감사인과 세무조정인이 다른 비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제2절 검증모형의 분석결과

1. 변수의 기술통계량

<표 5-6> 평균과 표준편차(n=1,650)

변수명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renftax1	0.027	0.629	-0.182	24.174
renftax2	1.158	9.516	-54.548	217.500
lsales	11.222	1.628	1.792	16.716
rtax	0.016	0.109	0	3.794

단, $renftax1_{i,t}$: 기업 i의 t년도 신고외형 대비 법인세추징세액

$renftax2_{i,t}$: 기업 i의 t년도 납부세액 대비 법인세추징세액

$lsales_{i,t}$: 기업 i의 t년도 신고외형의 로그값

$rtax_{i,t}$: 기업 i의 t년도 신고외형 대비 납부세액

본 연구에서의 가설 검증을 위한 검증모형에 대하여, 더미변수를 제외한 회귀 분석 모형에서의 변수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등은 <표 5-6>과 같다.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속변수인 법인세추징세액을($renftax1_{i,t}$, $renftax2_{i,t}$)의 평균은 각각 0.027과 1.158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신고외형의 로그값 평균은

11.222이고, 신고외형 대비 납부세액($rtax_{i,t}$)의 평균은 0.016인 것으로 나타났다.

2. 감사인 규모에 따른 법인세추징세액 차이에 대한 t-검정

<표 5-7> 감사인, 세무조정인 및 감사인-세무조정인 동일여부에 의한 t-검정 결과

Panel A : $renftax1_{i,t}$ 에 대한 t-검정			
변수명	집단구분		t-검정 (t)
$bigaud_{i,t}$	대형감사인(n=796)	비대형감사인(n=492)	-0.61
	0.0059	0.0064	
$bigtax_{i,t}$	대형세무조정인(n=287)	비대형세무조정인(n=1001)	0.46
	0.0064	0.0060	
$audtax_{i,t}$	감사인-세무조정인 일치 (n=384)	감사인-세무조정인 불일치 (n=904)	-0.25
	0.0059	0.0061	
Panel B : $renftax2_{i,t}$ 에 대한 t-검정			
변수명	집단구분		t-검정 (t)
$bigaud_{i,t}$	대형감사인	비대형감사인	-0.37
	1.4568	1.6668	
$bigtax_{i,t}$	대형세무조정인	비대형세무조정인	-1.97
	0.9868	1.6948	
$audtax_{i,t}$	감사인-세무조정인 일치	감사인-세무조정인 불일치	0.17
	1.6141	1.5043	

단, $renftax1_{i,t}$: 기업 i의 t년도 신고외형 대비 법인세추징세액

$renftax2_{i,t}$: 기업 i의 t년도 납부세액 대비 법인세추징세액

$bigaud_{i,t}$: 기업 i 의 t 년도 감사인 규모(1=Big, 0=Non-big)

$bigtax_{i,t}$: 기업 i 의 t 년도 세무조정인 규모(1=Big, 0=Non-big)

$audtax_{i,t}$: 기업 i 의 t 년도 감사인-세무조정인 일치여부
(1=일치, 0=비일치)

본 연구에서는 감사인 규모 등 총 3개의 더미변수가 독립변수로서 회귀분석 모형에 적용된다. 따라서 이들 변수의 집단구분에 의한 표본기업의 법인세추징세액 규모의 차이를 단일변량분석 방법에 의해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표 5-7>은 감사인규모별, 세무조정인 규모별 및 감사인-세무조정인 동일 여부에 따른 각 집단 간 법인세추징세액($renftax1_{i,t}$, $renftax2_{i,t}$) 차이에 대한 t -검정 결과이다. 이하에서의 검정통계량은 표본자료의 값이 (평균 \pm 3*표준편차)를 벗어나는 극단치(outlier)를 제거한 후의 결과이다.

위의 분석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사인 및 세무조정인의 규모, 그리고 감사인-세무조정인의 동일인 여부에 따라 법인세추징세액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표 5-7>의 Panel A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고외형 대비 법인세 추정액(변수명 $renftax1_{i,t}$)은 대형감사인보다 비대형감사인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Panel B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형감사인보다 비대형감사인의 경우가 납부세액 대비 법인세 추정액(변수명 $renftax2_{i,t}$)은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다음으로 세무조정인의 규모와 관련한 분석에서는, 신고외형 대비 법인세 추정액(변수명 $renftax1_{i,t}$)은 대형세무조정인 보다 비대형세무조정인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Panel A)되었다. 그리고 Panel B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형세무조정인보다 비대형세무조정인의 경우가 납부세액 대비 법인세 추정액(변수명 $renftax2_{i,t}$)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

마지막으로 감사인-세무조정인 일치여부에 따른 결과를 보면, 신고외형 대비 법인세 추정액(변수명 $renftax1_{i,t}$)은 동일 감사인-세무조정인의 경우와 비동일 감사인-세무조정인의 경우에 미세한 차이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Panel

A). 그러나 납부세액 대비 법인세 추정액(변수명 $renftax2_{i,t}$)의 경우에는 감사인-세무조정인이 동일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Panel B).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볼 때 감사인의 규모나 세무조정인의 규모 또는 감사인-세무조정인의 동일여부에 따른 신고외형 대비 법인세 추정액(변수명 $renftax1_{i,t}$)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납부세액 대비 법인세 추정액(변수명 $renftax2_{i,t}$)의 경우에는 비대형감사인일수록 그리고 비대형세무조정인일수록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감사인과 세무조정인이 동일한 경우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

3. 회귀분석 결과

본 논문에서의 검증모형에 투입되는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표 5-8>과 같다. * 표의 좌하단부는 종속변수가 신고외형 대비 법인세 추정액(변수명 $renftax1_{i,t}$)인 경우의 상관관계 분석결과이고, 우상단부는 납부세액 대비 법인세 추정액(변수명 $renftax2_{i,t}$)인 경우의 상관관계 분석결과이다.

<표 5-8> 상관관계 분석결과

	$renftax2_{i,t}$	$lsales_{i,t}$	$bigaud_{i,t}$	$bigtax_{i,t}$	$audtax_{i,t}$	$rtax_{i,t}$
$renftax1_{i,t}$		-0.0414	-0.0108	-0.0313	0.0053	-0.0872
$lsales_{i,t}$	-0.2241		0.0196	0.0406	0.0263	-0.0812
$bigaud_{i,t}$	-0.0165	0.0196		0.3979	0.0513	0.0213
$bigtax_{i,t}$	0.0146	0.0406	0.3879		0.6788	0.0202
$audtax_{i,t}$	-0.0071	0.0263	0.0513	0.6788		0.0035
$rtax_{i,t}$	0.1183	-0.0812	0.0413	0.0202	0.0035	

단, $renftax1_{i,t}$: 기업 i 의 t 년도 신고외형 대비 법인세추징세액
 $renftax2_{i,t}$: 기업 i 의 t 년도 납부세액 대비 법인세추징세액
 $lsales_{i,t}$: 기업 i 의 t 년도 신고외형의 로그값
 $bigaud_{i,t}$: 기업 i 의 t 년도 감사인 규모(1=Big, 0=Non-big)
 $bigtax_{i,t}$: 기업 i 의 t 년도 세무조정인 규모(1=Big, 0=Non-big)
 $audtax_{i,t}$: 기업 i 의 t 년도 감사인-세무조정인 일치여부
(1=일치, 0=비일치)
 $rtax_{i,t}$: 기업 i 의 t 년도 신고외형 대비 납부세액

한편 회귀분석에 있어서 변수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할 경우에는 추정계수의 분산이 증가되어 추정오류(estimation error)를 야기하는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표 5-8>에서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검토하여 보면, 세무조정인규모($bigtax_{i,t}$)와 감사인-세무조정인 일치여부($audtax_{i,t}$)간의 상관관계가 약 0.68로서 다중공선성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으나, 그 외의 모든 변수 간에는 상관관계가 0.4 이하로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유발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설정한 검정 모형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5-9>와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속변수가 신고외형 대비 법인세 추정액(변수명 $renftax1_{i,t}$)인 경우와 납부세액 대비 법인세 추정액(변수명 $renftax2_{i,t}$)인 경우 모두 신고외형($lsales_{i,t}$), 세무조정인의 규모($bigtax_{i,t}$) 및 당해연도 신고외형 대비 납부세액($rtax_{i,t}$) 등 3개의 독립변수와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연구가설 H1과 H3에 해당하는 변수인 감사인규모($bigaud_{i,t}$)와 감사인-세무조정인 일치여부($audtax_{i,t}$)에 대하여는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추정계수의 부호에 있어서는 신고외형($lsales_{i,t}$)에 대해서는 두 종속변수 모두 음(-)의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세무조정인의 규모($bigtax_{i,t}$) 및

당해연도 신고외형 대비 납부세액($rtax_{i,t}$)과의 관련성은 두 종속변수 간의 부호가 반대로 분석되었다. <표 5-9>의 결과를 통하여 볼 때, 표본기업의 신고외형이 클수록 신고외형 대비 법인세 추정액(변수명 $renftax1_{i,t}$)과 납부세액 대비 법인세 추정액(변수명 $renftax2_{i,t}$)은 한계적(marginal)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추론된다. 즉, 과세당국은 신고외형이 큰 기업에 대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성실신고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 5-9> 회귀분석 결과

$$renftax_{i,t} = a_0 + b_1 lsales_{i,t} + b_2 bigaud_{i,t} + b_3 bigtax_{i,t} + b_4 audtax_{i,t} + b_5 rtax_{i,t} + e_{i,t}$$

Panel A : $renftax1_{i,t}$ 에 회귀분석 결과

변수명	추정계수	t-값	F-값	조정된 R ²
$lsales_{i,t}$	-0.0021	-7.98***	17.12***	0.059
$bigaud_{i,t}$	-0.0012	-1.34		
$bigtax_{i,t}$	0.0023	1.65*		
$audtax_{i,t}$	-0.0014	-1.21		
$rtax_{i,t}$	0.0678	3.73***		

Panel B : $renftax2_{i,t}$ 에 회귀분석 결과

변수명	추정계수	t-값	F-값	조정된 R ²
$lsales_{i,t}$	-0.3177	-1.71*	3.18***	0.008
$bigaud_{i,t}$	0.3905	0.63		
$bigtax_{i,t}$	-1.6587	-1.68*		
$audtax_{i,t}$	1.1451	1.39		
$rtax_{i,t}$	-41.8432	-3.25***		

* 및 ***는 각각 유의수준 10%, 및 1% 이내에서 유의함
 단, $renftax1_{i,t}$: 기업 i의 t년도 신고외형 대비 법인세추정세액

$renftax2_{i,t}$: 기업 i의 t년도 납부세액 대비 법인세추징세액

$lsales_{i,t}$: 기업 i의 t년도 신고외형의 로그값

$bigaud_{i,t}$: 기업 i의 t년도 감사인 규모(1=Big, 0=Non-big)

$bigtax_{i,t}$: 기업 i의 t년도 세무조정인 규모(1=Big, 0=Non-big)

$audtax_{i,t}$: 기업 i의 t년도 감사인-세무조정인 일치여부

(1=일치, 0=비일치)

$rtax_{i,t}$: 기업 i의 t년도 신고외형 대비 납부세액

다음으로 세무조정인의 규모($bigtax_{i,t}$)가 클수록 신고외형 대비 법인세 추정액(변수명 $renftax1_{i,t}$)은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형세무조정인이 법인세조정계산후 납부신고를 하는 경우에 법인조사후 추정세액이 증가할 수 있다고 추론된다. 그러나 납부세액 대비 법인세 추정액(변수명 $renftax2_{i,t}$)은 유의하게 음(-)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추정액의 규모는 한계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가설 H1과 H3는 기각되었으나, H2는 기각할 수 없다.

제6장 결론 및 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과세당국의 법인조사에 의한 법인세추징세액을 감사인의 독립성에 대한 대응치로 하여 감사인과 세무조정인의 규모 및 감사인-세무조정인 일치여부와와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감사인의 독립성에 대한 대응치(proxy)로서 과세당국의 법인조사 후 결정되는 법인세추징세액이 감사인의 규모, 세무조정인의 규모 및 감사인과 세무조정인의 동일인 여부에 따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종속변수는 감사인의 규모($bigaud_{i,t}$), 세무조정인의 규모($bigtax_{i,t}$), 감사인-세무조정인의 일치여부($audtax_{i,t}$) 및 통제변수로서 해당표본의 신고납부세액($rtax_{i,t}$)을 이용하였다.

가설검정을 위한 실증분석은 t-검정과 회귀분석을 이용하였고,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감사인 규모에 따른 법인세추징세액 차이에 대한 t-검정 결과 감사인 및 세무조정인의 규모, 그리고 감사인-세무조정인의 동일인 여부에 따라 법인세추징세액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신고외형 대비 법인세추징액은 대형감사인보다 비대형감사인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납부세액 대비 법인세추징액에 있어서도 대형감사인보다 비대형감사인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있지 않다.

다음으로 세무조정인의 규모와 관련한 t-검정에서는 신고외형 대비 법인세추징액은 비대형세무조정인 보다 대형세무조정인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납부세액 대비 법인세추징액의 경우에는 반대로 대형세무조정인보다 비대형세무조정인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감사인-세무조정인 일치여부에 따른 결과를 보면, 신고외형 대비 법인세추징액은 동일 감사인-세무조정인의 경우와 비동일 감사인-세무조정인의 경우에 미세한 차이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납부세액 대비 법인세추징액의 경우에는 감사인-세무조정인이 동일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을 통해, t-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감사인의 규모나 세무조정인의 규모 또는 감사인-세무조정인의 동일여부에 따른 신고외형 대비 법인세추징액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납부세액 대비 법인세추징액의 경우에는 비대형감사인일수록 그리고 비대형세무조정인일수록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감사인과 세무조정인이 동일한 경우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가 신고외형 대비 법인세추징액인 경우와 납부세액 대비 법인세추징액인 경우 모두 신고외형, 세무조정인의 규모 및 당해연도 신고외형 대비 납부세액 등 3개의 독립변수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가설 H1과 H3는 기각되었으나, 가설 H2는 기각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계수의 부호에 있어서, 신고외형에 대해서는 신고외형 대비 법인세추징액 및 납부세액 대비 법인세추징액 등 두 종속변수 모두 음(-)의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세무조정인의 규모 및 당해연도 신고외형 대비 납부세액과의 관련성은 두 종속변수 간의 부호가 반대로 분석되었다.

표본기업의 신고외형이 클수록 신고외형 대비 법인세추징액과 납부세액 대비 법인세추징액은 한계적(marginal)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추론된다. 즉, 과세당국은 신고외형이 큰 기업에 대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성실신고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세무조정인의 규모가 클수록 신고외형 대비 법인세추징액은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형세무조정인이 법인세조정계산후 납부신고를 하는 경우에 법인조사후 추징세액이 증가할 수 있다고 추론된다. 그러나 납부세액 대비 법인세추징액은 유의하게 음(-)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추징액의 규모는 한계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대형 감사인의 감사품질이 비대형 감사인의 감사품질보다 양호하지 않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오히려 많은 선행연구결과에서 감사품질과 감사인 규모사

이의 관련성에 대하여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듯이 이러한 분석결과도 감사인의 규모에 따른 품질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오히려 이러한 분석결과는 감사인의 보수주의적 관점과 세무조사요원의 과세소득 축소보고 적발에 초점을 맞춘 조사관점 차이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된다. 하여튼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바와 달리 대형감사인이 감사한 경우에 추정세액이 많아진다는 분석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고, 그 구체적인 사유를 규명하기 위하여서는 보다 상세한 자료를 이용한 추가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참고문헌>

1. 국내 문헌

- 권수영·손성규·이은철, “비감사서비스가 감사인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29권 제2호, (2004).
- 금융감독원,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시제도의 개선”, (2001).
- 김문철·황인태, “감사의 품질차이가 전기손익수정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23권 제2호, (1998).
- 나종길·최기호, “이익조정과 감사의견”, 『한국회계학회 동계학술연구발표회 발표논문집』, (2000).
- 나종길·최관, “회계발생액과 차별적 감사수요”, 『회계학연구』, 제28권 제1호, (2003).
- 박수원, “법인세추징세액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박종성·손성규, “감사의견 표명 후 감사인이 부담하게 될 잠재적 비용이 감사의견 형성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25권 제3호, (2000).
- 박종일·이명곤·원형연, “재량적발생액을 이용한 감사인의 감사품질 분석”, 『회계와 감사연구』, 제35호, (1999).
- 박춘래·김종원, “세무전문가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회계저널』, 제11권 제2호, (2002).
- 이명곤, “우리나라 회계감사실무의 검토”, 『회계감사저널』, 제1권 창간호, (1999).
- _____, “회계감사인의 문화와 윤리수준에 관한 연구”, 『경영연구』, Vol. 15, (2000).
- 이양현·이선표, “세무조정대리인의 세무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세무학연구』, 제13권, (1999).

- 이효익, 『현대회계감사론』, (1999).
- 이효익·정영진·김한수·문상혁, “보수주의 적용과 감사인간의 품질차이 연구”, 『회계와 감사연구』, 제38호, (2002).
- 전태영, “세무조정대리인의 의사결정행태에 관한 연구”, 『회계학연구』, 제27권 제3호, (2002).
- 정석우·노준화, “감사인 변경방향이 재량적발생액에 미치는 영향”, 『한국회계학회 동계학술연구발표회 발표논문집』, (2000).
- 최관·백원선, “감사인의 유형과 감사품질 : 감사보수와 감사기간을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제23권 제2호, (1998).
- 최종학·박종일·전규안, “감사인의 피감사회사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감사인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Vol. 30, (2005).

2. 외국 문헌

- Antle, R., "Auditor Independenc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1984).
- Ashbaugh, H. R. LaFond, and B. Mayhew, "Do Non-Audit Services Compromise Auditor Independence?", Working Paper, University of Wisconsin, (2003).
- Cushing, B. E., "Discussion of Auditor Independence Judgements : A Cognitive-Development Model and Experimental Evidence",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Vol. 7, (1990).
- Chung, H. and S. Kallapur, "Client Importance, Non-Audit Services, and Abnormal Accruals", Working Paper, Purdue University, (2001).
- Danos, P., and J. Eichenseher, "Audit Industry Dynamics : Factors Affecting Changes in Client-Industry Market Shar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1982).

- DeAngelo, L., "Auditor Size and Audit Quality",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 (1981).
- Dee, C., A. Lulseged, and T. Nowlin, "Earnings Quality and Auditor Independence : An Examination Using Non-audit Fee Data", Working Paper, Florida State University, (2002).
- Farmer, T. A., L. E. Rittenberg, and G. M. Trompeter, "An Investigation of the Impact of Economic and Organizational Factors on Auditor Independence", *Auditing : A Journal of Practice and Theory*, Vol. 7, (1987).
- Frankel, R., M. Johnson, and K. Nelson, "The Relation between Auditor's Fees for Non-Audit Services and Earnings Management", Working Paper, MIT Sloan School of Business, (2002).
- Goldman, A., and B. Barlev, "The Auditor-Firm Conflict of Interest : Its Implications for Independence", *The Accounting Review*, (1974).
- Harris, M. and A. Raviv, "Optimal Incentive Contracts with Imperfect Information", *Journal of Economic Theory*, (April, 1979).
- Knapp, M. C., "Audit Conflict : An Empirical Study of the Perceived Ability of Auditors Resist Management Pressure", *The Accounting Review*, (1985).
- Palmrose Z. V., "An Analysis of Auditor Litigation and Audit Service Quality", *Accounting Review*, Vol. 8, (1988).
- Pearson, T., and G. Trompeter, "Competition in the Market for Audit Service : The Effect of Supplier Concentration on Audit Fees",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Vol. 11, (1994).
- Ponemon, L. A., and D. R. L. Gabhart, "Auditor Independence Judgements : A Cognitive-Development Model and Experimental Evidence",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Vol. 7, (1990).

- Reckers, P. M., and A. J. Stagliano, "Non-Audit Service and Perceived Independence : Some New Evidence", *Auditing : A Journal of Practice and Theory*, (1981).
- Shockley, R. A., "Perceptions of Auditor's Independence : An Empirical Analysis", *The Accounting Review*, Vol. 56, (1981).
- Shulte, A, A, Jr., "Compatibility of Management Consulting and Auditing", *The Accounting Review*, (1965).
- Simon, D. T., and J. R. Francis, "The Effects of Auditor Changes on Audit Fees : Tests of Price Cutting and Price Recovery", *The Accounting Review*, (1988).
- Townsend, R. M., "Optimal Contracts and Competitive Markets with Costly State Verification", *Journal of Economic Theory*, (1979).
- Watts, R. L., and J. L. Zimmerman, "Auditors and Determination of Accounting Standards", *Working Paper Series*, No. GPB 78-06, University of Rochester, (1981).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회계학과	학 번	20027453	과 정	박사
성 명	한글 : 양 금 속 한문 : 梁 今 淑 영문 : Yang Gum Sug				
주 소					
연락처			E-MAIL	yang304@hanmail.net	
논문제목	한글 : 감사인과 세무조정인의 규모 및 동일성에 따른 감사인의 독립성에 대한 연구				
	영어 : An Empirical Study on the Auditor's Independence on the Size and Identification of Auditors and Tax Accountants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2007년 2 월 일

저작자: 양 금 속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